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86-01

201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2013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11.

연구수행기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연구책임자 심미선(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 례

1. 연구의 배경 ········ 1

2. 뉴스 미디어에서의 인권 보도의 문제 ········ 2
1) 미디어에서 인권보도의 중요성 ········ 2
2) 보도의 인권침해 요인 ········ 5

3. 인권보도 준칙 제정과정 ········ 11
1) 제정 배경과 목적 ········ 11
2) 제정 경과 ········ 11
3) 제정 내용과 사례 ········ 15

4. 연구방법 ········ 29
1) 연구설계 개요 ········ 29
2) 뉴스미디어 모니터링 방법 ········ 30
3) 언론인 FGI ········ 37
4) 언론인 설문조사 ········ 48

5. 연구결과 : 뉴스미디어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현황분석 ········ 55
1) 뉴스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현황 분석 : 상반기 ········ 55
2) 뉴스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현황 분석 : 하반기 ········ 85

6. 결론 및 정책 제언 ········ 120
1) 연구결과 요약 ········ 120
2) 정책 제언 ········ 127

7. 부록 ········ 133

표 차례

<표 1> 언론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방법 개요 ··· 29
<표 2> 분석대상 일간지 및 채널 ··· 31
<표 3> 기자 집단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 38
<표 4> 언론인 조사대상자 특성: 성별, 근무기간별 분포 ··· 49
<표 5> 언론인 조사대상자 특성: 매체사별, 취재분야별 분포 ··· 49
<표 6>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정도 ··· 52
<표 7> 매체별 분석대상 기사수 ··· 55
<표 8> 매체별, 채널별 인권관련 뉴스보도 현황 ··· 59
<표 9>매체별 인권보도 유형 ··· 60
<표 10>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 비교 ··· 63
<표 11> 매체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 63
<표 12> 신문의 인권준칙 미준수 사례 ··· 64
<표 13>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 비교: 방송 ··· 66
<표 14>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 68
<표 15>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례 ··· 71
<표 16> 개인의 인격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 71
<표 17> 장애인 인권 보호 사례 ··· 73
<표 18> 장애인 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 74
<표 19>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 76
<표 20>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례 ··· 77
<표 21>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 77
<표 22> 노인인권 보호 사례 ··· 79
<표 23> 노인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 79
<표 24> 아동인권 보호 사례 ··· 81
<표 25> 아동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 81
<표 26>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 82
<표 27> 성범죄 보도준칙 준수 사례 ··· 84
<표 28> 성범죄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 84
<표 29> 매체별 분석대상 기사수 ··· 85

<표 30> 매체별, 채널별 인권관련 뉴스보도 현황 ························ 89
<표 31> 매체별 인권보도 유형 ························ 90
<표 32>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 비교 ························ 93
<표 33> 매체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 93
<표 34> 신문의 인권준칙 미준수 사례 ························ 95
<표 35>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 비교: 방송 ························ 96
<표 36>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 99
<표 37>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례 ························ 102
<표 38> 개인의 인격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 102
<표 39> 장애인 인권 보호 사례 ························ 105
<표 40> 장애인 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 105
<표 41>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 107
<표 42>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례 ························ 109
<표 43>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 109
<표 44> 노인인권 보호 사례 ························ 111
<표 45> 노인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 112
<표 46> 아동인권 보호 사례 ························ 113
<표 47> 아동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 113
<표 48>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 115
<표 49> 성범죄 보도준칙 준수 사례 ························ 117
<표 50> 성범죄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 118
<표 51> 자살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 119

그림 차례

<그림 1> 인권보도준칙의 세부 부문 ························ 15
<그림 2>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기준 인지율 ······ 51
<그림 3>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53
<그림 4>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 53
<그림 5>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이유 ························ 54
<그림 6> 기사유형별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 ························ 56

<그림 7>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에서의 인권보도 유형 ······································ 57
<그림 8> 인권관련 뉴스보도 유형 ··· 58
<그림 9> 인권관련 뉴스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여부 ··· 58
<그림 10> 민주주의와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상위 5위 ·· 68
<그림 11>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상위 5위 ·· 71
<그림 12> 기사유형별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 ·· 86
<그림 13>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에서의 인권보도 유형 ···································· 87
<그림 14> 인권관련 뉴스보도 유형 ··· 88
<그림 15> 인권관련 뉴스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여부 ··· 88
<그림 16> 민주주의와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 상위 5위 ······································ 99
<그림 17>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상위 5위 ······································ 102

1. 연구의 배경

뉴스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한 사회에서 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사람들은 뉴스가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에 뉴스의 사회현실 구성능력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뉴스가 사회현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뉴스의 이러한 영향력에 주목하여 미디어 뉴스가 인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일반인들이 소수자에 대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뉴스는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나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시각과 보도태도는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2011년 ‘인권보도준칙’(2011.9.23.)을 제정하고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은 비판과 감시를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무의식 또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에서 비롯된 반인권적이거나 차별적인 보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준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언론계에서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인권보도준칙 제정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9월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디어 현장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미디어 현장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체별 인권보도의 준수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인권보도준칙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미디어가 인권보도를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년 미디어 현장에서의 인권보도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도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인권보도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10개 중앙일간지와 3개 지상파방송 그리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인권보도준칙 준수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언론계 내부의 인권보도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권보도준칙 적용과 관련된 언론계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동시에 언론계 내부의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뉴스 미디어에서의 인권 보도의 문제

1) 미디어에서 인권보도의 중요성

그러면 미디어에서 인권관련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인권보도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이주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 침해 사례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 다문화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보도 사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조선일보의 경우,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은 단지 취재 대상일 뿐이며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코리안 드림”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런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1)]

조선일보는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2006.04)에서 경제력이 강한 나라에서 한국 남자와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베트남 여성의 결혼 과정을 보도했다. ‘맞선’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상품화 되는 모습을 상세히 전달했다. 기사전체는 결혼중계업체에서 한 광고 내용과 차이가 없고,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결혼한 과정을 관찰자적 태도로 단순보도 했다.

그들은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고 러띠딴 떠이씨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 몹시 기쁘다”고 어떤 여성은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했고 또 다른 여성은 농촌 총각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마을에 생기가 도는 것”이라고 「전남장성 보생리를 사로잡은 ‘경상도며느리’ 김향숙씨」(2007.11.03)에서 보도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조선일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거나 국제결혼이 한국사회의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적 목적으로만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식의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부각시키는

---

1) NGUYEN THI HIEN TRANG,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겨레」 및 「조선일보」 보도의 비교 분석" (성공회대:석사논문, 2009), p.46.

조선일보의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보도는 “코리안 드림” 즉 성공이라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었다.[2)]

□ 사례 2 :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호도 사례

> “우리에게도 많은 국민이 광원 간호사 일용직 등으로 외국에 나가 힘들게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다. 처지가 조금 나아졌다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대접받기 어렵다.” (동아일보 2003년 10월 30일)

> “값싼 노동력에 구미가 당겨 외국인 근로자를 부릴 때는 언제고 눈물과 한숨 속에 밀려나는 그들에 대해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이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어디 가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2~13위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2003년 11월 12일)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형 착취’들에 대해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더 늦어지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짓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2003년 11월 27일)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근본적인 인권 차원의 접근과 국가 이미지 관리를 통한 해외에서의 경제적 이익 획득 등과 같은 이해관계를 함께 접목시킴으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인간 그 자체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익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바라봄으로써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아닌 한국인들의 부끄러움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3)]

---

2) 위 논문 p.42-43
3) 정진우, “한국 미디어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보도 경향과 인식 연구” (성균관대:석사논문, 2004), p.59.

□ 사례 3 : 장애인에 대한 재현과 이미지 침해 사례[4)]

장애인에 대한 대부분의 미디어 보도는 비장애인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소재로 장애인을 도구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조선일보,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장애인에 대한 보도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의 실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 및 사례', '장애인의 인간적 행위 및 활동', '장애(인)와 장애시설에 대한 사회의 책무',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범주화 해보면, '장애인 자체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에 대해 일반인이 아니면 사회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도에서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는 다른 '타자(the other)'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처참하고 피폐된 현장들을 부각시키거나 장애인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생계곤란 상황', '임금 착취', '낙후된 환경에서의 삶의 영위', '강간과 폭력의 대상'등이 강조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서 마침내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인간승리'의 모습이나 훈훈한 '인간애'적인 감성에 소구하는 모습도 그려내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문화 및 예술, 그리고 교육 영역 등에서 장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비장애인인들보다도 훨씬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주고 있다. 아래 SBS의 <SBS 8 뉴스>에서 다룬 이승복씨의 뉴스는 바로 이런 보도태도의 전형을 보여준다.

> "장애의사 이승복 '열심히 산다는 것'" (SBS 8 뉴스 2005년 5월 24일)
> 전신마비의 장애를 딛고 미국 최고 병원의 의사가 된 재미동포 청년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핑계로 남의 도움에만 기댈 수는 없는 게 바로 의사 일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이승복씨의 분주한 하루가 그렇습니다. 이씨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보도 역시 장애인을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극복하기 힘든 역경들을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지닌 자들이 극복 했다는 점이 '의외적'이고 '신기하며', '특이하기' 때문에 뉴스 가치로서 높게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 장애인의 성과에 대한 보도 말미에 항상 '이러한 성과는 정상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글귀를 쓰고 있다는 데서 잘 들어나고 있다.

---

4) 백선기, "한국 언론의 '소수자·약자' 보도 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 (한국방송학회 2006 봄철 정기학술대회발표자료), p.16-18.

둘째, 장애인이나 장애 시설에 대한 일반이나 사회의 지원에 대한 부문인데, 이는 주로 비장애인들의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고, 일부 연예인이나 저명 인사들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행위들을 부각하기도 하고, 장애인과 장애시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에 주목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도의 유형은 장애인이나 장애시설, 장애인 복지, 장애 정책 등이 모두 '대상화(objectify)'되는 유형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장애시설 등이 사회가 배려해야 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특정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사회내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체들의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다시 위치 짓게 되는 것이다.

셋째, 보도의 프레임으로 분석해보면, 장애인의 보도의 경우는 주로 '실제 현장 프레임', '자아 반성 프레임', '동정 및 연민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보도에 있어서 '실제현장 프레임'은 장애인의 시설의 낙후함과 복지시설의 미비함에 집중하고 있고, '자아반성 프레임'은 주로 장애인들의 인간승리적 성과나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비장애인으로서의 자괴감이나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고, '동정 및 연민의 프레임'은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처우나 대접을 하거나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 사회에서 무관심하여 자살을 하게 하게 되는 사례들에 주목하면서 비장애인들로서의 부끄러움이나 동정심을 유발하게 한다.

이렇듯이, 장애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재현과 이미지(화)는 사회의 능동적 주체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객체로서 대상화 되어 있고, 비장애인들과는 격리되어 '타자'로서 위치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장애인의 행동 하나 하나가 주체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반성하고자 하는 '규범적 행위'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화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2) 보도의 인권침해 요인

현재 기존 연구를 통해 드러난 보도의 인권침해사례는 대부분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침해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왜 뉴스미디어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인권침해 보도가 많은 이유에 대해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5)]

(1) 소수자, 약자에 대한 이해 부족

우선 우리 신문들은 소수자·약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지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문사 내부에 전문가도 많고 사회구성원들의 관여가 많은 이슈와 달리, 소수자·약자의 이슈는 절대적으로 신문사 내부의 전문가가 적으며, 관여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수도 많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수자·약자의 이슈는 관련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 과도한 경쟁풍토와 특종의식

기자 사회에서는 사건이나 범죄기사 취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다른 신문사 기자들과의 경쟁경험이 무용담처럼 전해 내려오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무용담들은 특히 경찰 검찰 주변에 대한 취재훈련을 받고 있는 수습기자나 신입기자들에게 교육용으로 선배 기자들이 제공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지나친 경쟁풍토는 다른 기자들보다 더 많은 특종을 해야겠다는 욕심과 강박관념 등 때문임은 물론이다. 과거 A기자는 다른 기자들의 잇따른 특종으로 데스크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빨리 반까이(일본어로 '만회'를 뜻함. 기자 집단의 속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묘안 이 생각났다. 뱀집에서 살아있는 뱀을 몇 마리 사서 한창 영화를 상영 중이던 인근 극장으로 몰래 싸들고 들어갔다. 관객석에다 뱀을 슬며시 풀어놓고는 관객들이 일대 소동을 벌이게 되자 취재를 해 특종 이라며 신문사로 송고했다. 그러나 그의 소행은 경찰 수사에서 이내 들통이 났다. 이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에 속한다. 하지만 살인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취재하는 바람에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살인사건 피해자와 사고 희생자 집에 들어가 마루사진(얼굴사진)을 찾느라 온 집안을 뒤지는 경우,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 등을 다른 기자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납치해놓고 취재하는 경우 등 과잉경쟁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기자들의 이런 과잉 경쟁의 와중에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건이나 범죄기사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도되던 과거에 비해 요즘은 이런 현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침해의 주요인으로는 아직도 지나친 경쟁풍토가 우선적으로 지적된다. 한국언론재단(구 한국언론연구원)이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온 1999년도 한국 언론인의 윤리의식 조사 결

---

5) 육정수, "신문보도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석사논문, 2001), p.95-102.

과(언론인 500명 대상)에 의하면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는 어떤 요인에 의해 야기 되는가라는 질문에 64.2%가 언론의 상업주의로 인한 지나친 경쟁이라고 대답했다.

(3) 선정주의 상업주의적 보도자세

선정주의(sensationalism)는 독자들의 시선을 보다 많이 끌기 위해 사건이나 범죄의 특정 부분을 확대시켜 원초적인 감성과 호기심에 호소하는 보도경향을 말한다. 에드윈 에머리 같은 사람은 선정주의적 보도를 영혼이 없는 저널리즘 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상업주의(commercialism)는 언론사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는 영업과 판매이익 위주로 신문을 제작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기사 위주로 신문을 제작해야 판매부수가 올라가고, 판매부수가 올라가야 광고도 많아지며, 광고가 많아야 신문사의 재정이 튼튼해진다는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신문 시장이다. 이 때문에 신문의 상업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권위지와 대중지의 구별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겉으로는 권위 있는 신문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업적 측면을 의식해 대중지의 성격을 버리지 않는, 표리부동한 신문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선정주의적 보도에 관해서는 신문사와 기자들의 책임이 물론 가장 크지만 독자들의 요구와 취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당수 독자들이 말로는 신문의 선정주의적 흥미위주의 보도가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실제 신문을 읽을 때는 그런 기사를 좋아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왜 특정신문을 보지 않느냐고 물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상당수 독자들의 현실적 수준이다. 앞의 우리나라와 외국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정주의적 보도로 인해 사건 관계자나 범죄 피의자, 그리고 그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폐해는 바로 이런 선정주의적 보도에서 주로 파생된다.

선정적 범죄보도의 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민웅 1997)
첫째, 관찰학습에 의한 모방범죄를 유발한다. 범죄수법과 범행도구의 조작법, 입수경로 등

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유사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인터뷰를 통해 범죄 피의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범죄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게 된다.
셋째, 흉악범죄의 내용과 현장을 되풀이 보도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감퇴시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 보도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누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넷째, 부자들에 대한 피의자들의 빗나간 적개심을 반복 보도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불법적인 해결방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다섯째, 피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까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까지 침해한다.

(4) 기자들의 낮은 인권의식과 직업윤리

우리나라 현직 신문기자들을 상대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신문윤리강령이나 신문윤리실천요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일은 있겠으나 실제로 읽어본 기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기자들의 인권의식과 직업윤리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기자가 되기 위해, 이를테면 신문방송학 공부를 하면서는 물론이고 입사 후 수습기자 교육을 받으면서, 또는 재교육을 받으면서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직업윤리에 관한한 기자 각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서는 기껏해야 언론윤리법제론 언론윤리와 법제라는 과목이 일부 대학에 개설돼 있을 뿐 언론윤리에 관한 과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들 과목 역시 본질적인 언론윤리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언론 법제나 프로그램과 기사의 심의, 언론윤리강령과 언론 자유와 법익과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불과하다. 언론인들의 기초적인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사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대학에서 윤리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처럼 대학과정과 언론사 입사 후를 통틀어 체계적인 직업윤리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의식과 직업윤리가 기자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기사작성에 있어서 갖가지 가치관이 마구 뒤섞여 반영되다보니 과연 신문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문을 제작하는지 의문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자마다 인권의식이 달라 가령 간단한 똑같은 기사의 경우에도 어느 기자는 피의자의 실명을 쓰고, 어느 기자는 성만을 써서 ○ 모씨라고 표기하고, 어느 기자는 알파벳 이니셜을 쓰는 등 가지각색이다. 이런 기사들을 수정해서 출고하는 데스크들(부장, 차장)끼리도 의견이 각양각색이고 기사마다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건이나 범죄기사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게재 여부와 호칭문제 사진게재기준에서부터 사건관계자나 피의자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문제, 유괴 납치나 인질사건 독극물사건 등에 대한 경찰과의 협조문제, 가족 간의 범죄를 어떻게 보고 다뤄야 할 것인지, 범죄 피의자가 속한 기관 단체 기업의 보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권과 생명 인륜 명예 신용문제 등을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또한 촌지수수 문제를 비롯, 취재원 홍보관계자 등에게 식사나 술 등 향응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문제, 골프접대를 받는 문제, 초청자가 비용을 대는 해외여행 문제 등에 대한 윤리기준을 교육받는 경우도 전무하다. 이런 인권의식이나 직업윤리에 관해서는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실천요강과 각 언론사별 기자윤리강령 등에 일부 규정돼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5) 시간적 제약

기자들은 늘 마감시간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마감시간을 넘긴 뒤에는 제아무리 좋은 기사를 보내오더라도 기자들 표현대로 일단 킬(kill) 할 수 밖에 없다. 비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감시간은 신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마감시간이 기사를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 이런 시간적 제약은 그만큼 일선 기자나 데스크가 각종 위험요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개개의 사건 또는 범죄기사가 피의자의 인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충분히 사려 깊게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이는 데스크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능력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 요인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피의자의 인권문제 등을 점검, 고려해야 하고 만약 첫 판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다음 판에서는 즉각 시정하는 기민성을 발휘할 수박에 없다.

시간적 제약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직업윤리와 인권의식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방법이 있다. 교육에 의해 문제의식과

체크능력을 향상시키고 체질화 시킨다면 기사작성과 데스크 작업과정에서 훨씬 기동성 있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방법으로는 변호사에 의한 기사 사전심사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역시 기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6) 수사기관의 방관적 태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소환하거나 조사 후 귀가시킬 때는 기자들에게 함부로 노출돼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존중 사상이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신,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권옹호자로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이 실제 피의자 등을 소환할 때 보면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일부 특권층 인사들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 보안과 신변보호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 어떤 주요 인사들과 일반 시민 등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두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소환단계부터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풀리거나 편파수사·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등의 거센 비난과 논란까지 부른다. 1999년 옷 로비 의혹사건 수사 때 검찰은 당시 법무장관 부인을 소환하고 귀가시키면서 기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2001년 10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 간부는 검찰이 기자들에게 예고했던 날보다 하루 앞서 출두해 노출되지 않았다.

이 같은 피의자 보호 조치를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한다면 인권을 위해 크게 진전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8월 언론사 대주주들을 소환하고 구속할 때는 포토라인을 설치하도록 해 피의자들을 기자들에게 완전히 노출시켰다. 노출 여부가 오로지 검찰의 판단에 따른 자의적 조치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해야할 피의자는 자택에서부터 수사관청까지, 그리고 다시 수사관청에서 자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완벽하게 신경 쓰는 반면 그렇지 않은 피의자는 방치해 오가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 소환과 귀가 과정에서의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인권문제에 대해 검찰 경찰 등이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3. 인권보도 준칙 제정과정

1) 제정 배경과 목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대중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언론을 통해 인권문제를 보도할 때, 파급효과는 극대화 된다. 다만, 보도의 시점이나 총량과 함께 언론인이 어떤 관점과 기준에서 보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인권문제 보도 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 형성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인권관련 보도 시 적용할 기본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했다. 특히, 언론인의 무의식 또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에서 비롯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보도 가능성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했다.

또 기존에 실시했던 위원회의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물과 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 등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기 존재했던 위원회의 언론 보도 관련 보고서는 '2007년 분야별(장애, 이주민, 여성, 노인, 어린이, 청소년, 성적소수자 등) 언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10년 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 '2010년 방송모니터링 보고서-젠더에 관한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이 있다.

2) 제정 경과

인권보도준칙 제정 사업은 2011년 4월을 시작으로 9월 21일 확정서명식을 거행하기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인권보도준칙의 초안은 인권위원회의 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 성평등 관련 방송모니터링 보고서 등과 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의 공동기획 보도과정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초안을 토대로 준칙위원회 검토와 세미나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1) 「기자협회보」 공동기획보도와 캠페인

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3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취재팀[6)]을 구성해, 2011년 4월 27일

부터 6월 8일 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기자협회보에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는 기획명 하에 매호 1개면에 특집(메인과 박스, 200자 원고지 35매 분량)으로 게재되었다. 기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회차 (게재일)	메인 기사 (분야별 보도실태)	박스 기사
1회 (2011. 4.27.)	<장애인권 보도> 장애보다 '사람'에 주목하자!	1. 외국의 가이드라인과 법률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모니터단 백수정 팀장 인터뷰
2회 (2011. 5. 4.)	<성평등 보도> 남성과 여성 다르지만 같은 인격체	1. 광고 속 여성과 남성 2.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인터뷰
3회 (2011. 5.18.)	<이주인권 보도>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할 수 없다	1. 다문화 사회 정책과제 2.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고기복 대표 인터뷰
4회 (2011. 6. 1.)	<노인, 어린이, 성소수자 보도> 나이·성적지향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1. 노인인권지킴이단 박용기 대표 인터뷰 2. 서울YMCA 어린이모니터단 안수경 간사 인터뷰 3.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대표 인터뷰
5회 (2011. 6. 8.)	<인격권 보도> 알권리 vs 인격권 사회적합의 필요	1. 언론중재위 양재규 변호사 인터뷰 2.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상임이사 인터뷰

또한 공동기획보도와 병행하여 인권보도준칙 제정사업과 필요성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도 전개하였는데, 게재광고 현황과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6) 공동취재팀 : 김성후(기자협회보 기자), 김언경(방송독립포럼 사무국장), 박광우(인권위 홍보협력과 사무관)

게재일	지면	색도
2011. 4. 27.	1면	컬러
2011. 5. 4.	2면	흑백
2011. 5. 11.	1면	컬러
2011. 5. 18.	1면	컬러
2011. 5. 25.	2면	흑백

(2) '인권보도준칙위원회' 구성·운영

기자협회보 공동기획보도가 종료된 후, 인권보도준칙 초안 검토 및 준칙 마련을 위한 세미나 준비를 위해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했다. 준칙위의 활동은 2011년 6월 24일에 1차 회의(상견례, 준칙 실무안 검토와 세미나 준비), 7월 8일에 2차 회의(준칙 심의, 세미나 계획 확정), 7월 29일에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 8월 5일에 3차 회의(준칙 최종안 확정)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의 전후 수시로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했다. 준칙위는 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서 각각 3인 이상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름
위원장	김주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자문위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한국일보)
위원	신경민 MBC 해설위원 (전 뉴스데스크 앵커)
〃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간사 : 박광우(인권위 홍보협력과)

(3)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의견수렴을 위해 2011

년 7월 29일(금) 14시에서 16시, 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경민 MBC 해설위원의 사회를 맡았으며, 김주언 인권위·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위원장(전 한국기자협회 회장·한국일보)이 인권보도준칙 추진경과와 초안을 토대로 주제를 발표했다. 이후, 6명 참가자의 지정토론과 3명 참가자의 종합토론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토론 참가자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름
지정토론	○ 서수정 인권위 홍보협력과장 -언론시민단체 사전 자문 의견 취합 발표 ○ 심재억 서울신문 사회부 부장 ○ 심석태 SBS 인터넷뉴스 데스크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종합토론	○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 정책연구팀장)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4) 인권보도준칙 확정

이상 인권보도준칙 제정관련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하여 인권보도준칙 초안을 최종 확정, 보고 하였다. 2011년 8월 25일에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고, 9월 2일부터 3일까지는 기자협회 운영위원회에 확정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2011년 9월 21일 국가인권위원장, 한국기자협회장의 서명으로 인권보도준칙 확정 서명식이 거행되었다.

(5) 인권보도준칙 홍보와 교육

인권보도준칙안 홍보기사는 한국기자협회보에 지면 사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게시하였으며, 인권보도준칙 수첩을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5천~8천부 정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언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등을 통해 인권보도준칙안을 교육했으며, 인권보도상[7]을 제정하여 시상하였다.

3) 제정 내용과 사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은 <그림 1>과 같이 총 8개 부문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자세한 내용과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인권보도준칙의 세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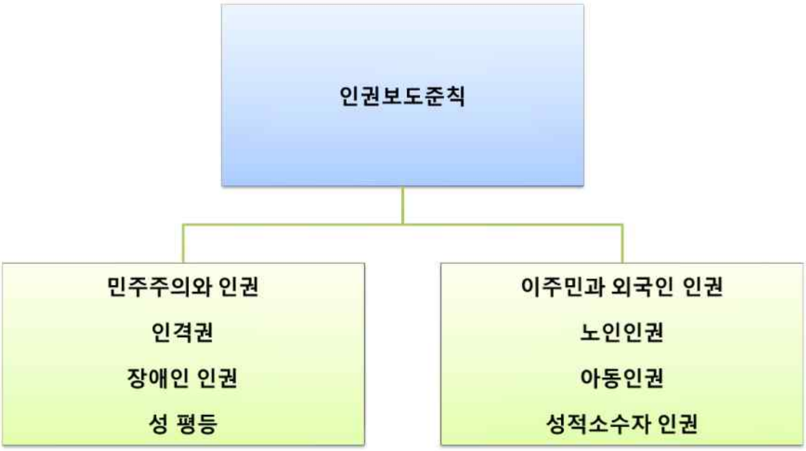

(1) 민주주의와 인권

①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구분	대표 사례
권위적인 용어	△ <사설-게이츠의 아름다운 퇴장과 공직사회> "우리나라는 어떤가. 역대 정권 때마다 **통치권자**와의 친소(親疏)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자리를 배분했다." (○○신문, 2011. 7. 3.)

7) 2012년 제1회 인권보도상 제정 시상(총 4건 선정)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	△ “최근 경제 관련 장관들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다는 **진언**들이 이 대통령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MB, 물가·구제역 관련 장관 개각 때 교체 검토> (○○신문, 2011. 3. 9.)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	△ <‘4대강’에 빠져 ‘예산국회’…물리**적 충돌** 예고> (○○신문, 2010.12. 1.)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경우	△“경찰청은 경찰서 앞에서 벌어지는 미신고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서 앞 **불법집회** 엄정 대응> (○○신문, 2011. 8. 1.)

② 언론은 특정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나.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다.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구분	대표 사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의혹 공방에만 몰두해서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외면하면 **만년야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사설-인사청문회 장과 자격 있는지 제대로 따져라> (○○신문, 2011. 5.23.)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64살 강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살기 어려워 홧김에"..은평구 연쇄방화범 검거> (○○방송, 2011. 3.28.)

구분	대표 사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측과 정부, 경찰 입장을 대변하거나 불법성을 단정하여 보도한 사례(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의 불법성 논란을 외면)	<고용노동부 유성기업 파업 불법 규정> (○○신문, 2011. 5.23.)
‘귀족 노조의 이기적 파업’이란 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한 사례	<어느 3차 차 부품 협력사 CEO “연봉 2200만원 우리 직원도 파업 않는데…”> (○○신문, 2011. 5.24.)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 집중적으로 부각한 불공정 사례	<자동차업계 ‘올스톱’ 위기> “민노총의 전략적 파업…분규 확산 우려” (○○신문, 2011. 5.24.)
노사 간 충돌만 지나치게 부각한 사례	<한진중공업 노조-용역 충돌…20명 부상> (○○방송, 2011. 6.12.)
노조 파업 관련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결정 사례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볼 기회 잃어> (○○신문, 2009.12. 4.) * 면접에 늦어 불합격한 것과 철도노조 파업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는 취지의 결정

(2) 개인의 인격권

①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라.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구분	대표 사례
당사자의 동의 없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신문, 2010. 5. 6.): 2007년 할아버지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12세 소년이 부모 없이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소년의 실명, 재학중인 학교명,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자세히 다룸으로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위협받은 가능성이 있고 소년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음. 언론중재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인정하여 1,500만원 배상 결정.
당사자 동의없는 초상권 침해사례	**<집은 많은데 갈 곳이 없네>** (○○신문, 2010. 1.16.):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담벼락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해서 마치 하숙집을 구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는 여대생인 것처럼 보도. 100만원 배상 합의 성립.
당사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 사용으로 문제된 사례	**<공포의 통과의례>** (○○방송, 1998. 1.13. 서울고법 판결): 성악과 대학생 4명은 방송사에서 신세대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 모습을 취재하겠다고 해 수락했는데 실제 방송된 내용은 신입생 환영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원, 방송사에 도합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공인'의 초상을 관련없는 보도에 사용한 사례	**<호화 결혼식 보도 사건>** (○○방송, 1996. 6.18. 서울고법 판결): 수백만 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도입부에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석한 바 있어 세간에 널리 알려진 임수경 씨의 결혼식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냄. 법원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1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암매장 살인사건>** (○○방송, 2010. 3. 8.): 방송에서 경찰이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암매장된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체 발굴 장면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고, 옷가지와 커튼으로 싸여있는 사체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어 유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사생활이 침해되었음. 언론중재위는 보도 자체의 공익성(흉악범죄의 재발 방지, 경각심 고취)은 인정되지만 사체 발굴 장면을 보도하면서 유족 측의 동의를 바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2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동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유감 표명하도록 결정.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대학병원 교수 자살 왜?>** (○○신문, 2010. 3. 5.): 개인적인 채무와 우울증 등이 자살원인이었으나 마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처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보도와 함께 유족 측에 100만원의 손해 배상금 지급 조정 성립.

② 언론은 범죄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구분	대표 사례
수사 중인 사건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동생이 빚 독촉하자 살해>** (○○신문, 2003. 8.):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단정적인 표현의 제목을 사용해 보도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18개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통해 건당 평균 3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결정.
용의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한 사례	**<골프장 사장 납치범 공개수배>** (○○방송, 2008. 4. 3.): 서울남부지법 판결): 인천공항 앞 도로에서 발생한 모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대해 경찰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를 벌이자 A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보도한데 대해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2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신문, 2010.8.2.): 성폭행 피해자의 성, 나이, 거주지, 동 이름, 가해자와의 관계를 적시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언론중재위 50만원 손해배상 조정 합의.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	**<고령의 할머니 성폭행 피의자 검거>** (○○신문, 2005.5.19.): 성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시 범죄 형태를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히 묘사하여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3) 장애인 인권

① 언론은 장애인들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
다. 장애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 표현.
마.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구분	대표 사례
잘못된 장애인 반대말 표현	“지난 2005년 한양대 재학시절에는 **정상인** 친구들과 함께… ” <사랑 그리고 희망 - 2010 대한민국 리포트 / 김동원씨 ‘불굴의 재활 도전기'> (○○신문, 2010. 9.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속담 인용	“보령지역 축산농가, **벙어리 냉가슴**, 한우가격 하락으로 근심” (○○통신, 2011.2.22.)
장애를 비정상적인 의미로 사용한 표현	<독해는 되는데 작문을 못해요-**절름발이 영어는** 이제 그만!> (○○신문, 2011. 3.28.)

장애와 질병을 혼동한 표현	"**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애인이라고 무시해"··30대 여성 연쇄방화> (○○방송, 2011. 4.10.) * '장애를 앓고 있는'은 '장애가 있는'이 바른 표현
장애 보장구 이용에 대한 잘못된 표현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어머니(85)와 피난중인 주부(61)는 …"<조용히 참던 일본인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문, 2011. 3.29.) * '휠체어에 의존하고'는 '휠체어를 이용하고'가 바른 표현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	"이 교수는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영씨 얘기를 쓴 게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묵 서울대 교수, 입으로 켜고 끌 수 있는 IPTV 개발> (○○신문, 2011.04.11.)

②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4) 성평등

①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구분	대표 사례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한 표현	<일상의 모습 누드로 담은 **여류사진작가**> (○○신문, 2011. 3.30.)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미망인인 고일신 여사**가 비에 헌화하고 있다." <농민문학가 이무영 기리는 무영제 열려> (○○통신, 2011. 4.20.)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타이거 우즈 내연녀** 우치텔 "우즈와 관계, 후회 한다> (○○신문, 2010.11.17.) * '내연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을 호명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 '내연관계'로 표현 가능(00의 '동거녀'도 동일)
가부장제에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	<김여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내조외교'**> (○○통신, 2011. 3.14.)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요즘 **장보러 나온 주부들은** 너무 뛴 물가 때문에..." (○○방송, 2010.10. 7.) * 장보기를 여성들의 일로만 규정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에서 특정 성만 표현	<중학생 절반 약골> (○○방송, 2010. 9.28.): 체력검사 하위등급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남성 그림만 표현

②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구분	대표 사례
선정적이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유이, 쇼핑 포착 '원조 **꿀벅지**+글래머스 라인' 명동시내 들썩> (○○신문, 2011. 4.25.)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표현	<대중문화의 신 권력 아이돌의 빛과 그림자> (○○방송, 2010.10. 1.): 걸그룹을 주요 볼거리로 과도하게 노출시킨 카메라 시선

(5)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①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

담 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구분	대표 사례
인종차별적 언어 표현	<‘**흑진주**’ 윌리엄스, 코트 복귀 채비> (○○신문, 2011. 4.13.) * 유독 흑인에게만 별명을 붙이는 표현 자제 필요
외국인 선수에 대한 잘못된 표현	<‘부진한 **용병**투수들’ 양승호 감독, “교체해 말어”> (○○신문, 2011. 5. 1.)
이주노동자의 노동 강도 등은 언급하지 않고 내국인과 단순 비교한 사례	<외국인 노동자 ‘귀한 몸’...구인경쟁 치열하다> (○○방송, 2011. 6.25.)

②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구분	대표 사례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표현한 사례	<**불법체류자** 많은 국가 송출 중단> (○○신문, 2011. 5. 2.)
성급하게 추측하여 이주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보도	“특히,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학교에서 결핵이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장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원인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안산에서 고교생 결핵 집단 발병> (○○방송, 2011. 4.15.)

재중동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도한 사례	<보수단체 간부 모친 살해용의자 조선족인 듯> (○○통신, 2011. 3. 22.)
이주 노동자를 교도소 수감자와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수감자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는 중소업체들의 결단도 한몫 했다. 안양에서 창고업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오씨는 “출소자에게 물류창고 키를 통째로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식자재 창고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구인난에 시달리던 오씨는 결국 수감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오씨는 행사장에서 7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안양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신문,2011. 5. 3.)
외국인 범죄를 확대해석한 보도사례	<유학생 경쟁적 유치 외국인 범죄 양산> (○○신문, 2010. 3. 24.)

(6) 노인 인권

① 언론은 노인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분	대표 사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노인은 판단력이나 셈이 약하고 속기 쉽다는 편견 등)를 조장한 사례	“가장 중요한 입주계약서가 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 중간에 퇴소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일도 적지 않다.”<실버타운 간부에 넘어간 ‘조선환관’ 양아들의 130억> (○○신문, 2011. 7. 5.)
동정적 시선으로 노인을 보도한 사례	“...눈물을 흘리며 서글픈 사연을 털어놨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독거노인 생일에 축하방문, 강북구 ‘감동 복지’> (○○신문, 2007. 6.14.)

②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7) 아동 인권

①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구분	대표 사례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시하는 표현	- 초딩, 중딩, 고딩 등의 표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시하거나 희화화 자제 필요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를 보도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청소년 사건에서 특이한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일부의 일탈이나 범죄행위를 '요즈음' 어린이나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태로 확대해석 주의
	- 청소년의 폭력 관련 보도에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해석 자제

②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구분	대표 사례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	각목 살인사건 보도 (○○방송, 2011. 5.15.): 한 남성이 각목으로 내리치고 쓰려져 있는 피해자를 발과 주먹 등으로 구타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화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방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결정

무분별하게 어린이를 인터뷰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	<초등학교 묻지마 폭력 성희롱 피해 '심각'> (○○방송, 2011. 5.20): 피해 어린이와 인터뷰 2차 폭력 노출 우려
입양아나 시설아동 등에게 상처를 줄 우려가 있는 표현	"일간지 신춘문예 수필부분에 당선된 작가이기도 한 강씨는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가슴 시린 아픔을 알게 됐다."<입양아 8명 키우지만 불편함 없어요> (○○신문, 2011. 5.10.)

(8) 성적 소수자 인권

① 언론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구분	대표 사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개념의 용어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동성애, 동성애자가 바른 표현 △<안젤리나 졸리, 피트 놔두고 **동성연애** 시작?> (○○신문, 2011. 5. 9.)
	- 호모 : 호모섹슈얼의 비하 표현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바른 표현 *이는 동성애가 마치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하며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오해 가능성 △<美연방법원, 軍 '**성적취향** 공개금지 규정 헌법위배 판결> (○○통신, 2010. 9.10.)
	-동성애를 항문성교와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동성 간 성행위를 막연히 동성애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혼동: 성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구별하지 않고 트렌스젠더에 대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혼란, 전환 등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단어의 뜻을 왜곡하여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	-커밍아웃: 현재 동성애자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 정세성을 밝히는 의미로 사용.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그동안 대졸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대학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하고 절 퇴학시켰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실패도 젊음의 한부분입니다> (○○통신, 2011. 2.16.)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아 은연중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	-(동성애를) '조장' 또는 '만연','유행'
	-'은밀한', '파문', '논란'
	-(동성애에) '빠져', (동성애를) '즐겨'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경악'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이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사례	<신앙과 건강-'생육·번성'가로막는 동성애 창조 섭리 거스르는 사망의 길> (○○신문, 2011. 3.27.)

②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구분	대표 사례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	* 참고: 1973년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편람'(DSM)에서 동성애는 삭제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
특정 질환과 막연히 연결시키는 표현	-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간염, 성병 등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식의 표현은 편견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동성애자, 마약중독자, 혈액투석 치료환자,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의료인도 감염될 위험이 높아”<전염성 강한 ‘간염’의 모든 것> (○○신문, 2007. 6.28.)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동성애나 성전환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매매나 마약중독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4.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개요

이 연구는 뉴스미디어의 인권보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대한 내용분석과 함께 현직 언론인의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지 및 태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언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언론인 조사는 언론인 대상 정성조사인 심층인터뷰와 정량조사인 설문조사를 모두 실시하였다. 일단 소수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 준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현 인권보도 준칙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뉴스미디어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음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인권보도란 무엇이며, 인권보도준칙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권보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전체적인 조사방법의 틀을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언론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방법 개요

	분석 목적	분석 방법	분석 기간	분석 대상
뉴스미디어 모니터링	뉴스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 미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내용분석	상반기 : 2013년 6월 3일(월) ~ 6월 30일(일) 하반기 : 2013년 9월 2일(월) ~ 9월 29일(일)	주요 일간지 10개 지상파 3개 채널, 종합편성4개 채널, 보도전문채널 1개(뉴스Y)
언론인 심층인터뷰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설문조사 기초자료 수집	심층인터뷰	1차 FGI : 2013년 8월 13일(4명) 2차 FGI : 2013년 9월 1일~20일까지 비구조화된 질문에 의한 이메일 조사(6명)	신문, 방송기자 중간부급기자와 일반기자 총 10명

언론인 설문조사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기자집단의 인식 파악	설문조사	2013년 9월 27일부터 기자협회의 도움으로 진행	신문, 방송기자 중간부급 기자와 일반기자 총 50명

2) 뉴스미디어 모니터링 방법

(1) 개요

뉴스미디어의 인권보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주요 뉴스미디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매체는 신문과 방송을 모두 포함했는데, 신문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읽히는 주요 일간지 10개를 선정하였고,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1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상반기 분석기간은 6월 3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4주간이고, 하반기 분석기간은 9월 2일(월)부터 9월 29일(일)까지 4주간이다[8].

또 신문매체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은 모든 기사를 다 내용분석 한다는 것이다. 즉 1면부터 별도 발행되는 섹션지까지 해당 신문사 기자가 쓴 기사에 한해서 모두 모니터링 하였다. 그러나 외부 필자의 기고나 칼럼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송의 경우에는 뉴스가 시간대별로 반복되므로 메인뉴스만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 KBS는 <KBS 뉴스 9>, MBC는 <MBC뉴스데스크>, SBS는 <SBS 8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종합편성채널이나 전문 보도채널의 경우에도 밤에 방송되는 메인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단 일부 종합편성채널(예; TV조선, JTBC)의 경우 평일과 주말 메인뉴스의 명칭과 시간대를 달리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과 주말 메인뉴스를 각각 달리 고려하였다.

분석방법은 신문의 경우 직접 지면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면을 구하지 못한 경우 각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 PDF파일로 모니터링 하였고, 방송의 경우에도 실시간 방

---

8) 이번 연구 사업인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는 당초 10대 중앙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와 지상파 방송(KBS, MBC, SBS 등), 종편 및 전문보도채널 각 1개 등 총 15개 매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종편의 경우 의무전송채널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 하에 모두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다.

송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방송을 놓쳤을 경우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시보기’로 분석하였다. 또 신문과 방송 모두 분석단위는 기사수로 하였다. 그 이유는 방송은 기사건수와 시간을 모두 체크할 수 있지만, 신문의 경우에는 보도시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아 모니터링을 진행한 일간지 및 채널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대상 일간지 및 채널(프로그램 포함)

<table>
<tr><th>신문</th><th>지상파방송</th><th>종편 및 전문보도채널</th></tr>
<tr><td>경향신문</td><td>KBS <KBS 뉴스 9></td><td rowspan="2">채널A <종합뉴스>
(평일 밤 9시 40분, 주말 밤 6시 20분)</td></tr>
<tr><td>국민일보</td><td>MBC <뉴스데스크></td></tr>
<tr><td>내일신문</td><td>SBS <SBS 8 뉴스></td><td rowspan="2">TV조선 <뉴스쇼 판> (평일 밤 9시 40분)
TV조선 <주말뉴스 토, 일> (주말 밤 6시 50분)</td></tr>
<tr><td>동아일보</td><td rowspan="7"></td></tr>
<tr><td>서울신문</td><td rowspan="2">MBN <MBN 뉴스 8> (저녁 8시)</td></tr>
<tr><td>세계일보</td></tr>
<tr><td>조선일보</td><td rowspan="2">JTBC <JTBC NEWS 9>(평일 저녁 8시 50분)
JTBC <JTBC 주말뉴스>(주말 오후 5시 45분)</td></tr>
<tr><td>중앙일보</td></tr>
<tr><td>한겨레</td><td rowspan="2">뉴스Y <뉴스Y>(저녁 8시)</td></tr>
<tr><td>한국일보</td></tr>
</table>

뉴스미디어 모니터링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담당해온 회원들이 담당했는데,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은 한 사람이 1개 매체의 뉴스 프로그램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다. 또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하기에 앞서 상반기 하반기 모두 각각 두 차례씩의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니터링 교육은 전체적인 연구의 배경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한 모니터링 도구를 설명하고, 각자 집에서 해당 일간지 및 채널의 뉴스를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였다. 두 번째 모니터링 교육은 집에서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서 사례별로 명확한 기준점을 잡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사례별로 의견의 차이를 보인 부분에 대해 합의해가면서 모니터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모니터 요원들은 각각의 뉴스보도 중에서 인권보도준칙을 미준수했다고 판단되

는 부분의 사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성민우회에서 가장 숙달된 모니터요원 두 명이 모든 사례들을 보면서 일관된 코딩이 이루어졌는지 검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2) 모니터링 도구

내용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니터링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스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도구 역시도 각 일간지 및 채널의 메인뉴스에서 인권보도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과 2012년에 제정된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준용하여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었다. 자료분석은 인권보도준칙 기준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든 아니면 미준수 사례든 관련기사의 유무에 따라 0과 1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1은 관련기사가 있다는 것을, 0은 관련기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호	분석내용	세부유목
1	분석매체	① 신문 ② 지상파방송 ③ 종합편성채널 ④ 보도전문채널
2	분석채널	일간지: ① 경향신문 ② 국민일보 ③ 내일신문 ④ 동아일보 ⑤ 서울신문 ⑥ 세계일보 ⑦ 조선일부 ⑧ 중앙일보 ⑨ 한겨레 ⑩ 한국일보
		지상파: ⑪ KBS ⑫ MBC ⑬ SBS
		종합편성채널: ⑭ 채널A ⑮ TV조선 ⑯ MBN ⑰ JTBC
		보도전문채널: ⑱ 뉴스Y
3	뉴스종류	① 스트레이트 ② 해설 ③ 기획기사 ④ 사설 ⑤ 칼럼 ⑥ 인물 동정 ⑦ 단신
4	인권보도 유무	① 인권보도와 관련 ② 인권보도와 관련 없음
5	인권보도유	① 민주주의와 인권 ② 인격권 ③ 장애인 인권 ④ 성평등

	형	⑤ 성폭력, 성범죄 ⑥ 이주민과 외국인인권 ⑦ 노인인권 ⑧ 아동인권 ⑨ 성적 소수자 인권[9)]
6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 ① 권위적인 용어를 사용했는가? ②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③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④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 보도 ①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②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보도나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 사측의 일방적 주장대변 (예: 귀족노조 등) -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을 집중적으로 부각 -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측, 정부, 경찰입장 대변 - 계층갈등 조장,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③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해서 사용? ④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7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인격권 침해** ① 공인이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동의하에 공개했는가? (인권보호준칙) ②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침해 ④ 공인의 초상권을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했는가? (가령 공인의 초상권을 자료화면 식으로 인용하는 경우임) ⑤ 개인의 질병이나 병명을 주의 없이 공개했나? ⑥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는가? ⑦ 자살사건의 경우 죽은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했는가?(인권보호준칙)
		무죄추정의원칙, 기본권 침해 보호

		①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② 용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나? ③ 용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했는가? ④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묘사를 했는가?
8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장애인 인격권 보호** 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②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했는가? ③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는가? ④ 장애를 질병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사용했는가? ⑤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했는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①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장애를 고치라 등) ②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했는가? ③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④ 장애인 촬영 시 장애부위를 부각하거나 인격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인권보도준칙) 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 시 신중을 기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⑥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인식 개선에 노력했는가? (인권보도준칙) -장애인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장애인의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 묘사하기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 다루지 않기
9	성평등 보호 준칙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강화** ①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했는가?

		②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③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④ 부정적 이미지 연상: 얼굴마담, 타이거우즈의 내연녀, 꼬리친다, 앙칼지다, 여우 ⑤ 가부장제에서 전통적 여성 역할 강조: 내조 외교 등 ⑥ 성역할 강화표현: 장보러 나온 주부들 ⑦ 양성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시 특정성만 표현
		성적 대상화, 상품화 보도 ①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②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했는가?
10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다문화 존중** ① 다문화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려고 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② 특정 국가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③ 이주민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의 보도를 했는가? ④ 이주민을 한국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동정 받아야할 대상으로 묘사했는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 ①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②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③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로 묘사했는가?
11	노인인권 보호 준칙	**노인문제에 접근방식** ①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했는가? ② 동정의 시선: 독거노인 눈물을 흘리며 서글픈 사연 ③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범죄, 자살 등을 개인문제로 접근했는가? ④ 노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는가? (인권보도준칙)
		노인의 존엄성 존중 (인권보도준칙)

		①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했는가? ② 노인인권 침해, 특히 사설 생활 노인의 인권문제를 관심 있게 보도했는가?
12	아동인권 보호지침	**어린이 청소년 인권** ①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했는가? ②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해 보도했는가? (인권보도준칙)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 문제 ① 어린이,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했는가? ② 입양아나 시설아동에게 상처를 줄 표현을 했는가? ③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 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④ 범죄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았는가? (인권보도준칙)
13	성적 소수자와 인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 ①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가? ②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는가? ③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스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성적 소수자를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①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질병으로 묘사했는가? ② 특정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지어 표현했는가?
14	성범죄 보도와 인권	**성범죄에 대한 시선 (인권보도준칙)** ① 성범죄 보도가 사회적으로 뉴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②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도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반인권적 범죄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는가? ③ 성범죄 발생 원인을 사회 안정망 부재 및 범죄 예방체지 미비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는가?

		성범죄보도행태 ① 성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이나 성욕 등의 문제만을 부각했는가? ② 성범죄 보도 시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에 대한 분노 등을 지나치게 조장하지는 않았는가? ③ 성범죄를 피해자의 도덕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 했는가? ④ 성범죄 보도 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존중 해 보도했는가? (인권보호 준칙) ⑤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는가?

3) 언론인 FGI

(1) 개요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 준칙을 취재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기자 집단은 현재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인권보도준칙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인권보도준칙 FGI 참여대상은 평기자와 팀장급으로 나눠 구성했으며, 신문매체 종사자와 방송매체 종사자가 비슷하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처음에는 4-5명씩 2-3회에 걸쳐 진행하려고 했으나 2013년 8월 13일(화요일) 4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1차 FGI를 진행한 이후 시간을 조율하기 어려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응답을 받았다. 1차 FGI는 대략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고, 이메일 조사는 FGI에서 질문되었던 동일한 질문에 대해 기자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내용은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지여부 및 문제점, 활용방안 그리고

9) ① 민주주의와 인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보도를 말함. ②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 및 기본권 침해관련 내용을 지칭함. ③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 인권격 및 존엄성 무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말함. ④ 성평등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강화, 성차별적인 표현 사용여부를 말함. ⑤ 이주민과 외국인인권은 다문화 인종존중 및 다문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과 관련된 내용을 말함. ⑥노인인권은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지칭하며, ⑦ 아동인권은 어린이 청소년 존중 및 어린이 청소년 안정망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고, ⑧ 성적 소수자 인권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말함.

보완되어야할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기자 집단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구분	참여대상	성별	매체	소속	일시 및 장소
1차 FGI	평기자 1	여	신문	중앙일보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12:00~13:30) 광화문
	평기자 2	여	신문	경향신문	
	평기자 3	남	방송	채널A	
	평기자 4	남	방송	TV조선	
2차 FGI	부장급 1	남	신문	동아일보	메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부장급 2	여	신문	한겨레	
	부장급 3	남	방송	MBC	
	부장급 4	여	방송	KBS	
	부장급 5	남	방송	SBS	
	부장급 6	남	방송	뉴스Y	

심층인터뷰는 비구조화 된 질문지를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보여준 후, 진행됐다. 인터뷰 질문지에 포함된 질문들은 ①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아는지? 안다면 인권보도준칙은 필요하다고 보는지, ② 인권보도준칙이 취재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만약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③ 기자에게 인권보도준칙을 알리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④ 현재의 인권보도준칙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은 무엇이며, 인권보도준칙에서 포괄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등이다.

(2) 인터뷰 결과

①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인권보도 준칙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기자와 부장급 인터뷰

참여자들 대다수가 몰랐다는 답변을 했다. 혹은, 신문협회 기사를 통해서 제정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준칙의 내용을 찾아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자살 보도나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인권보도준칙이 분야별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평기자 3)

“만들어졌다는 거는 알았는데 찾아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평기자 2)

“인권보도준칙이 2011년 제정됐다는 사실 자체를 기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기자협회보나 관보에 게재됐는지는 몰라도 일선 기자들에게 따로 통보되거나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부장급 1)

“인권보도준칙의 제정 사실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지난해 난민에 대한 보도 이후 올해 초 인권보도상에 응모하면서 인권보도준칙의 제정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인권보도준칙의 존재를 계속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부장급 4)

심층인터뷰를 위해 인권보도준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인권보도준칙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응답자들의 인권보도준칙 인지율이 매우 낮은 것과는 모순되게 인권보도준칙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인권보도준칙보다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높은 자살보도준칙과 선거보도준칙 같은 경우, 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기자들게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준칙들이 기자 개인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수준을 넘어 제재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권보도준칙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출고하기 전에… 이 준칙이 아니더라도 기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나중에 소동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기자라면 누구나 의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살 보도 준칙이 생기면 자살보도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노끈으로 매고, 이런 식으로 쓰는 기자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권 준칙도 이게 확실하게 각인만 된다면... 어떤 기사를 작성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썼던 표현들을 많이 순화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거든요.” (평기자 3)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권보도준칙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기자로써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연한 것들은 빠른 판단이 요구되고 수용자들의 이목을 끌어야 된다는 미디어적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쉽다. 바로 이러한 환경 때문에 세세하게 명시된 인권보도 준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인권보도 준칙은 대부분 주요 분야별로 핵심을 잘 짚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당연한 문구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당연함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일 거란 생각에 확실히 규정해 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들은 분야별 요강 메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 하나하나가 무수히 반복되는 그릇된 표현의 좋은 예라고 보여 집니다." (부장급 6)

② 취재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앞서 인권보도준칙의 인지여부를 논하는 질문에 인터뷰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모른다'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인권보도준칙의 실효성 정도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또 인권보도준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준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이 인권보도준칙을 숙지한 상태에서도 준칙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권보도준칙을 자살보도준칙과 동일한 수준에 놓지는 않았다. 즉,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당장에 누군가가 해를 입고, 기자가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인권문제 같은 경우는 자살문제와 달리, 인권 보도를 잘못해서 누군가가 큰 피해를 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작년에 나주 아동성폭행 사건 때 그 때 언론들이 과도하게 보도한 데 대해서는 확실한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쓰면 피해자가 생기는구나 인지하게 되지만, 인권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기자 분들이 인식을 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기자 3)

> "인권보도준칙은, 일반적인 기자로서 지켜야 할 취재, 보도원칙의 수준에서 지켜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 즉 소송을 당할 것인가가 됩니다." (부장급 4)

“인권침해 이거는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살색이라고 쓰더라도 어떤 외국인이 갑자기 왜 살색이라고 쓰냐고 나타나서 기자한테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거죠. 다른 보도와는 달리...” (평기자 3)

둘째,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에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지만,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존립위기에 처한 기존 언론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적극적인 인권보도는 언론의 상업적 코드와 맞지 않기에, 소극적 준수 차원에 머무르게 할 뿐이며,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부분도 빠른 판단을 요하는 속보경쟁 하에서는 준수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벤츠 여검사 사례, 검사가 뇌물을 받고 어쩌구 한 건데, 제목에 굳이 여를 넣어야 되냐 지나가는 말로 데스크에게 한 말씀 드렸는데, 여를 넣고 안 넣고가 사건이 와 닿는 게 다르니까 아직까지 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평기자 2)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등록된 공식 언론사 수만 17개, 게다가 종합편성 채널 출현으로 인해 MBN을 제외하고, 4개의 뉴스채널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곧 돈이고 경쟁력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사 초기 경영환경이 열악한 종편 4사의 경우 시청률 표기를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해가며 자사 경쟁력을 ‘광고주’ 들에게 호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분히 자극적인 묘사나 재연, 성범죄 등의 선정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지상파 뉴스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8시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MBC와 SBS의 경우에도 사건 사고나 치정관계 등 선정적인 뉴스가 주요 블록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력이 없는 인권보도 준칙이 생존의 문제에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장급 3)

“실제로 갈등되는 상황에서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보도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인권보도 준칙이 명분만 있지 실질적인 취재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큰 것 같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다보면 기사 자체를 아예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인권문제 때문에 기사 자체를 아예 내보내지 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장급 5)

동일 선상에서, 방송뉴스의 특수성을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신문매체와는 달리 방송뉴스는 기사내용뿐만 아니라 영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호소력 있게 찍힌 영상이 있는 기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기사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다.

“사실 방송사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과정이 기사내용 뿐만 아니라 화면도 같이 담기는 ‘이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신문 기사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신문의 경우 기사가치를 판단해 데스크의 수정을 거쳐 내보내면 그만이지만, 방송뉴스의 경우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뉴스라고 해도 이른 바 ‘그림’이 없으면 비중 있게 다뤄지기 힘들고, 반대로 뉴스가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림’이 좋으면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뉴스가치 판단을 내용과 화면 두 가지로 하다 보니 일단은 현장이 있으면 찍고 보자는 심리가 큰 것 같습니다. 설령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더라도 찍고 나서 생각하자는 게 현장에서 뛰는 방송 기자들의 솔직한 자세이고, 그렇다보니 취재 현장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인권 등이 고려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장급 3)

셋째, 인권보도준칙의 내용 중 민주주의와 인권 항목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일었다. 문제시 된 몇몇 단어들은 뉴스 수용자들도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순화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수용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며, 지면과 영상의 분량 제한 상, 일일이 설명을 덧붙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언론보도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인격권이라던가 장애인 인권 등은, 문제다 하니까 잘 지켜지는 거고, 성평등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조금씩 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와 인권은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평기자 1)

“다른 준칙보다 준수율이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마평, 통치권자, 영수회담 정치부 기자들이 쓰는데. 저도 정치부 근무해 봤습니다만 동의하기 어렵고요. 관행적으로 그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평기자 3)

“보도는 기본적으로 시청자, 또는 독자의 이해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자들의 인식 또한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들의 인식이 성역할에 대해, 이주민에 대해, 또는 노인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의 기준에 의해 보도하게 될 경우 그 취지를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장급 4)

“용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자들은 ‘독자들도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꺼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맥락에서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 얼굴을 밝힌다든가 실명을 쓴다거나 이것도 ‘아니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는데 왜 얼굴을 보여주면 안돼?’ 라고 기자가 쉽게 국민을 대신해서 뜻을 행사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마평, 읍소 이런 단어도 우리는 국민들이 이렇게 쓰는 게 이해하기 편하니깐 쓰는거죠. 기자들 인식이 이런 상황에서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정당화 해버리면 안지키면서도 떳떳하거든요 기자들은.” (평기자 2)

넷째,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 관련기관과, 언론사내의 교육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권보도준칙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해주는 역할을 맡는 곳이 현재로서는 양측 어디에도 없다고 보았다.

“학교나 학자들이 볼 때는 고칠 게 너무 많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일할 때는 선배들한테 학습이 되고, 출입처 하고의 계속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학습이 되고... 그러면은 100중에서 10정도는 잘못됐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건 외부에서의 교육이나 사내에서의 심의내지는 그런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외부에서는 교육이란 건 홍보조차도 안 되어있고, 내부에서도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 그러면 기자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마평 쓰고, 고객 쓰고, 통치권자 쓰고... 쓰고도 불만이죠. 잘못됐단 자체도 모르죠.” (평기자 4)

다섯째, 사내 선배 기자로부터 교육되어 이어져오는 관습, 기본적인 윤리정도는 현장기자가 알아서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실제적으로 기사를 편집하는 편집기자와 뉴스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을 결정하는 데스크의 영향도 인권보도준칙 준수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인권보도준칙이 잘 알려져 있거나 교육되지 않은데다 현장기자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문화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큽니다. 취재할 때 갈등되는 상황마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보단 개인의 판단이나 회사 데스크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장급 5)

“데스크와 부장이 일종의 판단자로서 기사 내용에 따라 제동을 거는데 언론사마다 데스크와 부장의 성향이 다르고 회사 가치가 다른데다 데스크와 부장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 면이 큰 게 문제입니다. 일선 기자가 준칙에 따라 보도를 자제한다고 해도 결국 결정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일선기자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작다는 것도 언론사 마다 문화차이가 있습니다. (부장급 5)

③ 인권보도준칙이 시행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인권보도준칙의 실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준칙 제정 기관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준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의견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동의했다. 특히, 평기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데스크들에게 인권보도준칙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선 젊은 취재기자들은 비교적 인권보도 감수성이 뛰어난데 결국 기사 데스킹의 키를 갖고 있는 팀장급 이상에서 그런 감수성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언론사 팀장이상 간부급들이 인권취재보도 준칙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행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장급 5)

“기자들의 기사 생산은 매일매일 이뤄지는데다가,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준칙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준칙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평기자와 데스크, 부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장급 2)

“방송사 같은 경우엔 모든 작업이 협업을 통해 이뤄집니다. 취재기자가 아무리 인권 준칙을 준수해 기사를 작성한다 해도 카메라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 또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인권준칙이 지켜지는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갈립니다. 문제는 영상 취재나 영상편집, 특히 편집과정에선 시간에 쫓길 경우 그릇된 자료를 큰 고민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인권보도 준칙을 알리는 대상이 취재기자뿐이 아닌 방송사의 영상취재, 영상편집 인력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장급 6)

효과적으로 홍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첩으로 제작해 전체 기자들에게 배포해,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수첩을 제작할 때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인권보도준칙을 앞쪽에 배치시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인권보도준칙만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사례를 통해 인권보도준칙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 한발 더 나아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작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사례 예시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재의 것으로 업데이트돼서 가이드북 형식으로 작은 수첩을 지급한다거나, 언론재단에서 신입기자들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장급 5)

“단순히 홍보책자로 준칙 내용을 배포하는 것에서 탈피해, 준칙에 담긴 내용을 실질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칙에 지적된 여러 내용들 중에서 사실은 ‘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공자님 말씀이네. 당연한 거잖아’ 싶은 내용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이걸 섞어놓은 상태에서 내용을 배포하면 당연히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모음집> <나도 모르게 인권을 짓밟은 기사 사례>같은 방식으로 기자들이 읽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장급 2)

홍보, 교육과 같은 방법 외에도 인터뷰 참여자들 대다수가 준칙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제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령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얻게 된 준칙 위반 결과를 각 사나 해당 기자에게 알리자는 것이다. 인권보도준칙을 해당 방송사에서 그리고 해당 기자가 얼마나 미준수했는지를 공표하고 알리는 것은 인권보도준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는데 그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기적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일지를 공개한다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은 메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별 빈도를 공개하든지.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게 심의한 메일을 보낸다거나 언론사별로 어디가 얼마나 안 지켰는지 공개하는 식의 강력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알아서 잘하자 식으로는 인권보도준칙을 제대로 인식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문화가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부장급 5)

“경각심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시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우수매체>를 지정하는 거지요. 동일한 하나의 사건, 예를 들어 윤창중, 윤중천 등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거나, 분기별 주요기사 3-4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인권준칙 위반 적발건수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BEST 매체와 WORST 매체들을 구분해 공시하고, 시상을 하는 식으로 발표하면... 그 자체도 기사도 될테고, 나쁜 매체들에 대한 낙인찍기 효과도 있을테니 경각심도 어느정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장급 2)

“인권보도준칙이 권고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각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내용 가운데 인권보도준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를 언론인들에게 제공하고, 언론인 스스로 보도에서 어떤 점들이 인권 보호의 대의에서 벗어났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인권보도준칙의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장급 4)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인권보도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권보도에 대한 사후 제재와 정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사후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산하에 설치해도 되고, 기존 언론중재위 내부에 인권보도 중재위를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언론 중재 제소 가능성을 매우 신경 쓰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런 수단이 생겨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인권준칙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장급 3)

④ 인권보도준칙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제정된 인권보도준칙 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면 하나는 인권보도준칙 유형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사소한 것을 문제 삼는다는 의견이다. 우선 인권보도준칙 유형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보도준칙의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인권보도준칙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인데 반해 다른 인권보도준칙은 주제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대상으로 분류하던 아니면 주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사소한 것을 문제 삼음으로써 인권보도준칙의 준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가령 인터뷰 현장에서는 '고객'이라는 단어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인권보도준칙을 보면 고객이라는 용어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용어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단어가 된다. 그러나 기자입장에서도 또 수용자 입장에서도 고객이라는 단어가 수용자를 비하하는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보도준칙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가 수시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카테고리가 챕터별로 되어있는 데 주제별 카테고리가 아니고 어떤 거는 대상자별 카테고리였다가 어떤 건 주제별 이어서 카테고라이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기자 3)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을 지적한 부분은 동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장보기를 여성들의 일로만 규정한다는 예시가 있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로 추정되는데, 해당 문장을 보면서(들으면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성평등은 분명 지켜져야 합니다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장급 2)

인권보도준칙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는 의견도 일었다.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당시보다 현재 사회적으로 더 문제되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교와 북한인권, 지역색과 정치성향 그리고 외모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정도 보완을 생각해봤는데요, 종교가 빠져있더라고요. 또 이주민은 있는데 탈북자는 없어요. 탈북자라는 용어는 새터민으로 바꾸자 했는데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도 탈북자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주민은 챕터 하나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탈북민은 소홀히 하는 게...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요. 탈북자는 아주 극단적인 인권이잖아요. 보도 경쟁을 해버리면 죽여버리거나 송환이 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또 범죄 부분도 피해자 항목이 좀 적더라고요, 대신 8장은 불필요하게 비대하

고.... 그 때(가이드라인 만들던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너무 안 지키니까 구체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주민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고, 따라서 이 부분은 사회변화에 맞춰 조정해 가야하는게 아닌가...” (평기자 3)

“지역 색이나 정치 성향과 관련해 원칙을 지켜서 보도해야할 부분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베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댓글문화에서도 지역색이나 정치성향에 따른 폭언들이 많은데 언론도 그것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모중시풍조를 조장하거나 몸에 대해 강박증을 갖게 할 수 있는 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준칙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부장급 5)

4) 언론인 설문조사

(1) 언론인 설문조사의 개요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이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취재 현장에서 제정된 인권보도 준칙을 참고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설문조사는 신문사와 방송사에 근무하는 50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자선정은 한국기자협회와 협의하였다. 설문조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자들을 살펴보며, 남자 기자가 40명, 여자 기자가 10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여자기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체사별 응답자 비중을 보면 신문기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 기자가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송관련 기자는 총 10명인데, 이중 지상파방송사에 근무하는 기자 5명, 종합편성채널 기자 4명, 보도전문채널 기자 1명이다. 또 취재 분야별로 보면, 정치부 기자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부기자가 19명으로 조사에 응한 사람은 대부분 정치부 기자와 사회부 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조사에 응한 기자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하 기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1-15년차 기자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5년차 이상 기자활동을 한 기자는 4명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언론인 조사대상자 특성: 성별, 근무기간별 분포

성별분포			근무기간별 분포		
성별	사례수	%	근무기간	사례수	%
남자	40명	80%	10년이하	28명	58.4%
여자	10명	20%	11-15년	16명	33.3%
			16년이상	4명	8.3%
합계	50명	100%	합계	48명	100%

<표 5> 언론인 조사대상자 특성: 매체사별, 취재 분야별 분포

성별분포			근무기간별 분포		
매체사	사례수	%	취재 분야	사례수	%
신문사	22명	44.0%	정치부	26명	53.1%
인터넷뉴스	18명	36.0%	사회부	19명	38.8%
지상파	5명	10.0%	문화부	1명	2.0%
종합편성채널	4명	8.0%	기타	3명	6.1%
보도전문채널	1명	2.0%			
합계	50명	100%	합계	49명	100%

(2) 설문조사의 내용

이번 설문조사는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을 현직 언론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조사목적에 맞게 기자의 배경질문과 함께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여섯 개로 간단하게 구성하였다[10].

10) 조사설문지는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배경질문

○ 성별
○ 종사하는 언론매체
○ 취재 활동분야
○ 기자활동 연수

②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식

○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여부
○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정도
○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취재 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 취재현장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

(3)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기자들이 뉴스 취재현장에서 취재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준칙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물어보았다. 또 우리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도준칙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취재 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는 어떠하며, 취재현장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①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여부

조사대상 기자집단 50명중에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명으로 약 94%가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이 제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자는 34명으로 77.3%이고,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자는 40명으로 81.6%의 인지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세부 권고기준에 비해 높게 나왔다. 한편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정도에서도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2>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기준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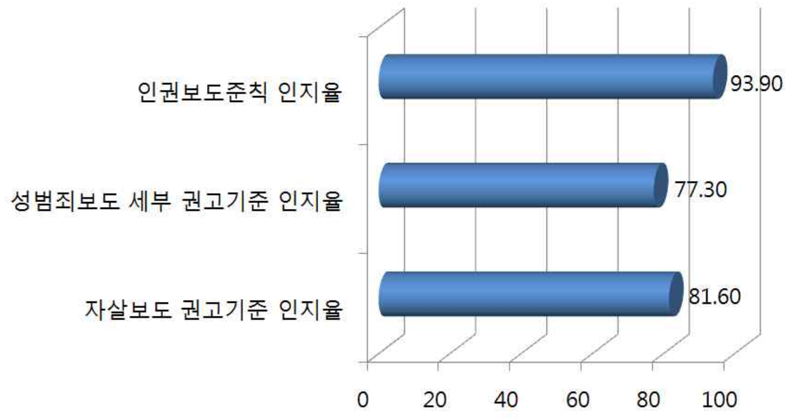

②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정도

그러면 기자들은 각종 취재관련 권고기준을 실제 기사 작성 시 얼마나 참고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인지율이 90%이상 높게 나왔던 인권보도 준칙의 경우에도 실제로 세부 규정을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1%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의 경우에는 50.0%,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31.4%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세부 권고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기사 작성 시 참고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인권보도준칙의 경우 21.4%,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은 23.3%,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34.3%로 이런 권고기준들을 실제 기사작성 시 참고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권보도준칙은 다른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이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비해 참고한다는 응답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정도에서도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정도 (단위: %)

	인권보도 준칙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	자살보도 권고기준
알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	38.1(16)	50.0(15)	31.4(11)
대충 훑어보았다.	26.2(11)	13.3(4)	17.1(6)
한두 번 읽어 본 적은 있으나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하지는 않는다.	14.3(6)	13.3(4)	17.1(6)
중요한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기사를 작성 할 때도 참고하는 편이다	21.4(9)	10.0(3)	25.7(9)
중요한 사항은 잘 알고 있으며 기사를 작성 할 때도 매번 이를 염두에 두고 참고하는 편이다	-	13.3(4)	8.6(3)
합　계	100.0(42)	100.0(30)	100.0(35)

* (　)은 사례수임.

③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기자 10명중 9명은 인권보도준칙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기사작성 시 인권보도준칙을 참고하는 기자는 10명중 2명에 불과해 현재 언론사 기자들에게 있어 인권보도준칙의 활용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에 응한 50명의 기자 중에서 48명은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나머지 2명의 기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미루어볼 때, 현재 기자들은 인권보도준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활용하고 있지도 않지만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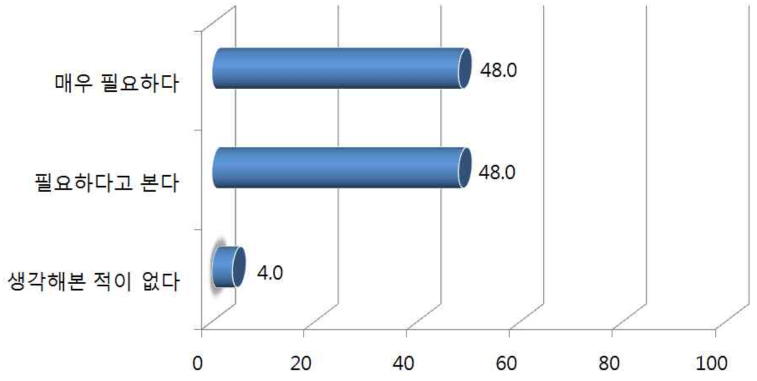

④ 취재 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및 미준수 이유

취재현장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별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잘 지키는 준칙도 있고 그렇지 않은 준칙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나왔고,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인권보도준칙은 취재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취재 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에 대한 인식에서도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4>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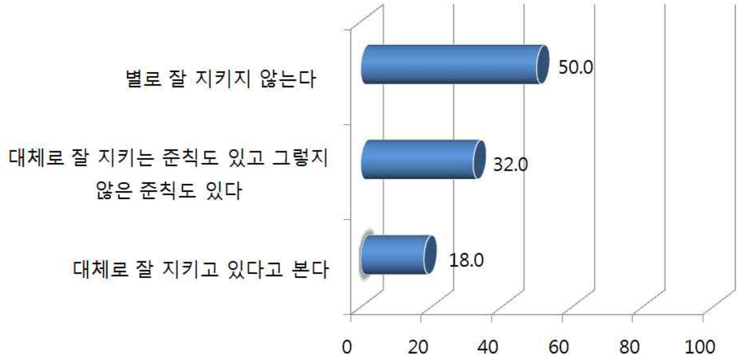

그러면 왜 인권보도준칙이 취재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지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시간이 쫓기다보니' 참고할 수 없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잘 몰라서'(32.7%), '기사작성에 타성이 붙어서'(32.7%), '튀고자 하는 기자욕심 때문에'(22.4%)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의외로 인권보도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튀고자 하는 기자욕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은 인권보도준칙이 취재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이유에 대해서도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5>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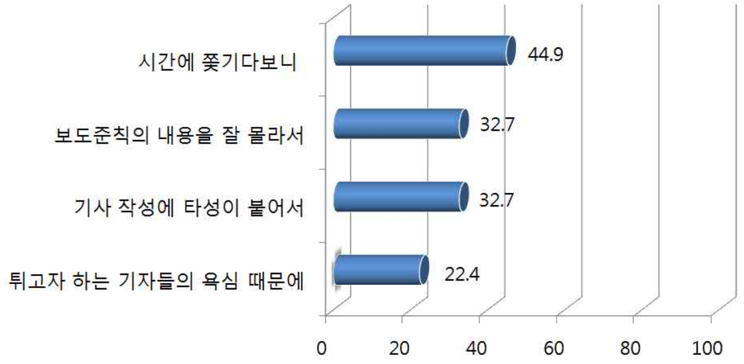

5. 연구결과 : 뉴스미디어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현황분석

1) 뉴스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현황 분석 : 상반기

(1) 개요

상반기 뉴스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현황분석은 2013년 6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주요 일간지와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되었다. 4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 총 기사건수는 31,013건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494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다.

이를 주요 일간지 및 채널별로 살펴보면, 10개 주요 일간지에서 모니터링 한 총 기사건수는 24,871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20%가 바로 텔레비전 뉴스의 기사건수이다. 이중에서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는 전체의 1.6%에 달하는 494건인데, 이중에서 신문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57.5%이고, 지상파방송은 14.0%, 종합편성채널은 24.5%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신문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신문의 미준수건수가 많이 나온 것은 모니터링 총량에서 신문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각 매체별로 총 기사건수대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의 비율을 보면 신문매체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평균(1.6%)보다 낮은 1.1%에 불과한데 반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3%내외로 나왔다.

상반기 분석결과로만 보면, 텔레비전보다는 신문이 인권보도준칙을 상대적으로 잘 지킨다고 볼 수 있으며,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순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매체별 분석대상 기사수

매체	전체기사 건수 (A)	인권보도 관련 기사건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건수 (B)	미준수건수대비 % (B/C)	전체기사대비 % (B/A)
신문	24,871건	284건	57.5%	1.1%

지상파뉴스	2,293건	69건	14.0%	3.0%
종합편성채널	3,265건	121건	24.5%	3.7%
보도전문채널	584건	20건	4.0%	3.4%
합계	31,013건	494건 (C)	100.0%	1.6%

한편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적된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29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설기사(94건), 기획기사(37건), 칼럼(22건), 단신(22건), 인물동정(11건), 사설(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권보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총 299건인데 이중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미준수한 사례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평등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7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미준수한 사례는 6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개인의 인격권'과 '성평등 보호', '민주주의와 인권'을 미준수한 사례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한편 해설기사에서는 인권보도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94건 나왔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인권보도 유형은 '성평등 보호'와 관련된 뉴스(28건)였다. 그 다음 개인의 인격권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21건이나 나왔다.

<그림 6> 기사유형별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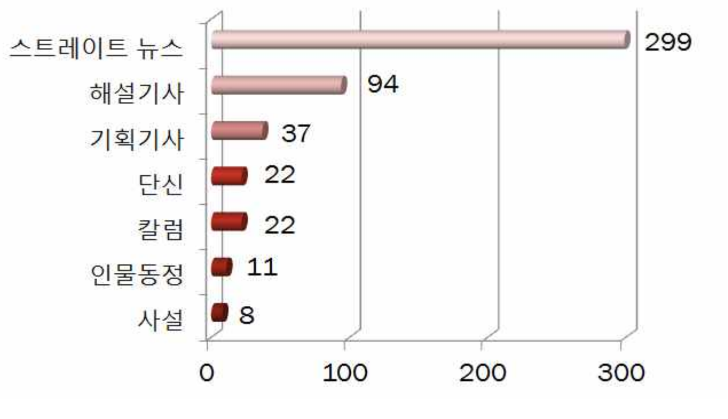

<그림 7>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에서의 인권보도 유형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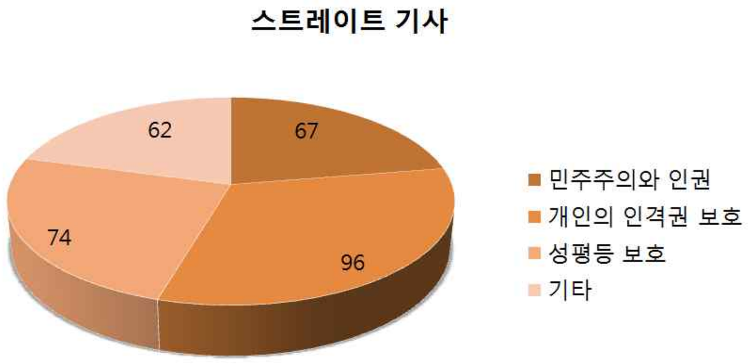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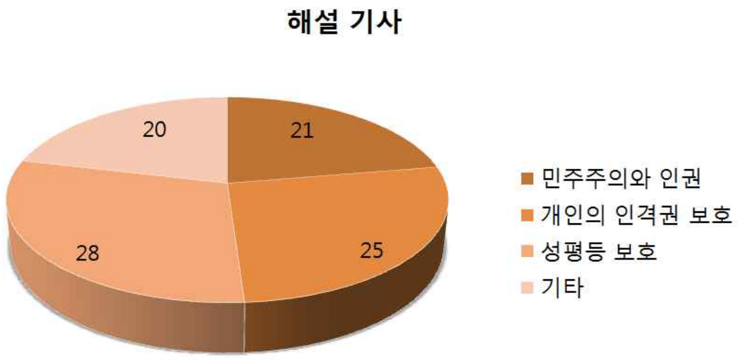

(2) 인권과 관련된 뉴스보도 현황

전체 모니터링 뉴스보도 중에서 인권과 관련이 있는 뉴스보도는 얼마나 되는가? 분석결과 인권문제를 다룬 뉴스보도는 877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인권을 다룬 뉴스주제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룬 뉴스가 296건으로 가장 많고, 성평등 관련 인권뉴스(153건), 인격권(123건), 성폭력, 성범죄(82건),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79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또 인권문제를 다룬 뉴스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877건 중 101건으로 인권보도 뉴스의 11.5%를 차지했다. 인권관련 뉴스에서 인권보도준칙을 미준수한 유형

을 살펴보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주주의와 인권(27건), 성평등 보호(18건), 아동인권(9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그림 8> 인권관련 뉴스보도 유형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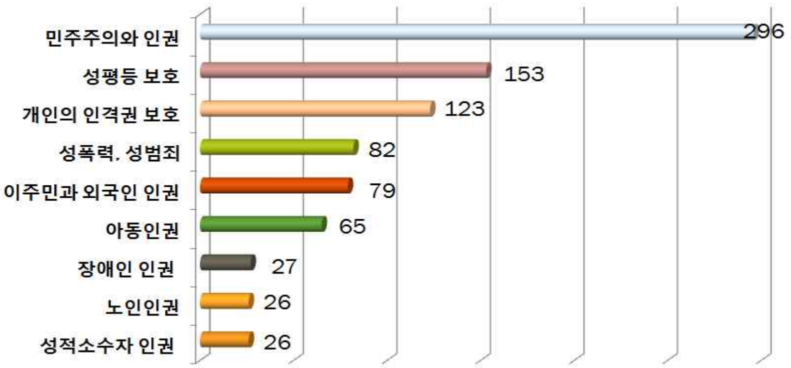

<그림 9> 인권관련 뉴스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여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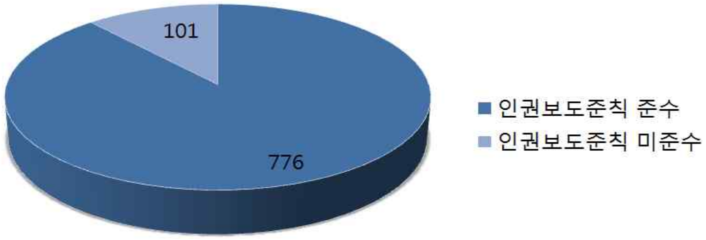

한편 인권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가장 많이 한 매체는 신문으로 나타났다. 인권관련 뉴스의 85%가 신문에서 보도되었고, 그 다음은 종합편성채널(72건, 8.2%), 지상파(41건, 4.7%), 보도전문채널(15건, 1.7%)의 순으로 나왔다. 이를 다시 채널별로 살펴보면, 신문매체 중에서는 서울신문(327건)과 경향신문(166건)이 인권과 관련한 보도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은 조선일보(57건), 한겨레(50건), 한국일보(41건), 세계일보(38건), 중앙일보(27건), 국민일보(22건), 내일신문(12건), 동아일보(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매체 중에

서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인권과 관련한 뉴스보도를 가장 많이 했고(32건), 그 다음은 MBN(22건), MBC(16건), 뉴스Y(15건), SBS(14건), KBS(11건), TV조선(9건), JTBC(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매체별, 채널별 인권관련 뉴스보도 현황

신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신문	건수	채널	건수	채널	건수
서울신문	327건	MBC	16건	채널A	32건
경향신문	166건	SBS	14건	MBN	22건
조선일보	57건	KBS	11건	연합뉴스Y	15건
한겨레	50건			TV조선	9건
한국일보	41건			JTBC	9건
세계일보	38건				
중앙일보	27건				
국민일보	22건				
내일신문	12건				
동아일보	9건				
소계	749	소계	41	소계	87
합계		877건			

매체별로 주로 다룬 인권관련 보도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37.5%)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반면, 방송에서는 성폭력 및 성범죄(22.7%)와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뤄 인권보도 유형에서도 매체별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신문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다음으로 많이 다룬 인권관련 유형은 성평등(19.2%)과 인격권(13.8%)의 문제였다. 방송의 경우에는 성폭력 성범죄관련 다음으로 많이 다룬 인권보도 유형은 아동인권(18.8%)과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17.2%) 그리고 인격권(15.6%)의 문제였다. 신문에서는 아동인권과 관련된 뉴스가 5.5%에 불과했는데, 방송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인권과 관련된 뉴스보도를 많이 한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문과 방송에서 가장 관심을 덜 기울이는 인권뉴스는 바로 장애인 및 노인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였다.

<표 9> 매체별 인권보도 유형

인권관련 보도 유형	신문		방송		전체	
	%	건수	%	건수	%	건수
민주주의와 인권	37.5	281	11.7	15	33.8	296
인격권	13.8	103	15.6	20	14.0	123
장애인 인권	3.2	24	2.3	3	3.1	27
성평등	19.2	144	7.0	9	17.4	153
성폭력, 성범죄	7.1	53	22.7	29	9.4	82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7.6	57	17.2	22	9.0	79
노인인권	2.8	21	3.9	5	3.0	26
아동인권	5.5	41	18.8	24	7.4	65
성적소수자 인권	3.3	25	0.8	1	3.0	26
전체	100.0	749	100.0	128	100.0	877

(3) 매체별 인권보도 유형별 미준수 사례 현황

그러면 각 매체 및 채널별로 어떤 부분에서 인권보도 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뉴스미디어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인권보도 준칙의 9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인권보도 영역은 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②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③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④ 성평등 보호 준칙, 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⑥ 노인인권 보호 준칙, ⑦ 아동인권 보호 준칙, ⑧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 준칙, ⑨ 성범죄와 인권보호 준칙 등이다. 각 유형별 매체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아래 <표 10>과 같다.

전체적으로 뉴스미디어가 인권보도준칙을 가장 많이 미준수한 분야는 바로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으로 나타났다. 총 494건 중에서 142건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체의 28.7%를 차지한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미준수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말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분석결과 '개인의 인격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신문보다는 방송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미준수 사례 총 142건 중에서 신문의 미준수 사례는 45건에 불과한데 반해 방송의 미준수 건수는 97건으로 신문의 2배가 넘었다. 또 방송매체 중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50건(51.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상파방송(34건), 뉴스Y(1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다음으로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 분야는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보도였다.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보도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131건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보도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이라든가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보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우리 언론은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표현이라든가 권위적인 용어 사용 그리고 특정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보도’ 분야에서는 방송보다는 신문매체의 미준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총 131건 중에서 107건(81.7%)이 신문에서 발견되었다. 또 방송매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 건수는 24건인데, 이중에서 22건이 종합편성채널에서 발견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지상파방송에서 지적되었다.

세 번째는 ‘성평등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보호’준칙 미준수 건수는 126건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한다.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주로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를 말하는데, 가령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성평등 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텔레비전보다는 신문에서 많이 나왔는데, 총 128건 중에서 신문에서 89건(70.6%), 방송에서 37건(29.4%)이 발견되었다. 또 방송매체 중에서는 지상파방송에서보다는 종합편성채널에서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는 20건이 성평등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상파에서는 10건이 지적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보도’, ‘성평등 보호’, ‘개인의 인격권보호 준칙’ 다음으로 미준수 사례가 많이 나온 영역은 바로 ‘아동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이다. ‘아동인권 보호 준칙’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총 42건의 미준수 사례가 발견되었다. ‘아동인권 보호 준칙’ 역시 신문에서는 미준수 사례가 4건에 불과했으나 방송에서는 아동인권을 미준수한 사례가 38건이나 나왔다. 또 아동인권 미준수 사례는 종합편성채널보

다는 지상파뉴스에서 많이 지적되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한편 '성범죄 보도와 인권'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20건이 나왔다. '성범죄 보도와 인권' 미준수 사례는 주로 성범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리고 성범죄의 수법과 과정 등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매체별로 '성범죄 보도와 인권'준칙 미준수는 신문(11건)과 방송(9건)의 미준수 건수가 비슷하게 나왔다. 또 방송에서는 지상파(2건)보다는 종합편성채널(7건)에서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도 18건이 발견되었는데,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주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역시도 신문의 미준수 건수가 16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송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2건 발견되었는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각각 1건이 발견되었다.

한편 '성적소수자와 인권보호' 준칙(7건),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5건) 그리고 '노인인권 보호준칙'(3건)의 미준수 사례는 10건 미만으로 나왔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사례는 주로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성적소수자를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지어 보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침해사례는 주로 다문화 인을 비하하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하는 뉴스보도를 말한다. 또 '노인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 노인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각 등을 말한다. 이들 분야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적게 나온 것은 이들에 대한 보도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성적소수자나 이주민 그리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준칙은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세 영역의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는 방송보다는 신문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신문과 방송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의 유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뉴스미디어가 인권보도준칙을 가장 많이 미준수한 영역은 크게 '개인 인격권 보호'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성평등 보호'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의 미준수 정도는 신문과 방송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가령 신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성평등 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반해 방송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가장 많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 비교 (단위: 건수)

분석 채널	인권침해 미준수 사례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1순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2순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3순위
신문 소계	284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 보호	개인의인격권 보호
방송 소계	210	개인의인격권 보호	성평등 보호	민주주의와 인권
TOTAL	494	개인의인격권 보호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 보호

<표 11> 매체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인권보도 유형	합계	신문매체 (10개)	방송매체 (8개)	지상파 채널(3개)	종합편성 채널(4개)	보도전문 채널(1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보도준칙	131	107	24	2	22	-
개인의인격권 보호 준칙	142	45	97	34	50	13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18	16	2	1	1	-
성평등 보호준칙	126	89	37	10	20	7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5	4	1	-	1	-
노인인권 보호 준칙	3	3	-	-	-	-
아동인권 보호 준칙	42	4	38	21	17	-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 준칙	7	5	2	-	2	-
성범죄와 인권보호 준칙	20	11	9	2	7	-
합계	494	284	210	70	120	20

(3) 일간지 및 채널별 인권보도 유형별 미준수 사례 현황

신문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미준수한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 신문의 경우 인권보도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신문은 한겨레로 91건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신문 미준수 사례 284건 중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겨레신문 다음으로는 한국일보(55건), 서울신문(33건), 동아일보(25건), 내일신문(23건), 세계일보(17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주요 일간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권보도 준칙을 잘 준수한 신문으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들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조선일보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미준수한 기사는 2건, 중앙일보에서는 9건에 불과했다.

한편 각 신문사별로 미준수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신문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도준칙을 미준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한국일보와 국민일보는 '성평등 보호 인권준칙'을, 세계일보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표 12> 신문의 인권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분석 채널	인권준칙 미준수사례	인권준칙 미준수 1순위	인권준칙 미준수 2순위	인권준칙 미준수 3순위
경향신문	14건	민주주의와 인권 (12건)	개인 인격권 보호 (2건)	-
국민일보	15건	성평등 보호 (4건)	성적소수자와인권 (4건)	민주주의와 인권 (3건)
내일신문	23건	민주주의와 인권 (13건)	성평등 보호 (5건)	아동인권 보호 (2건)

동아일보	25건	민주주의와 인권 (10건)	개인 인격권 보호 (7건)	성평등 보호 (5건)
서울신문	33건	민주주의와 인권 (14건)	성평등 보호 (10건)	개인 인격권 보호 (3건)
세계일보	17건	개인 인격권 보호 (8건)	성평등 보호 (6건)	민주주의와 인권 (3건)
조선일보	2건	민주주의와 인권 (2건)	-	-
중앙일보	9건	민주주의와 인권 (3건)	성평등 보호 (3건)	-
한겨레	91건	민주주의와 인권 (38건)	성평등 보호 (24건)	개인 인격권 보호 (19건)
한국일보	55건	성평등 보호 (32건)	민주주의와 인권 (9건)	개인 인격권 보호 (5건)
신문 소계	284건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 보호	개인 인격권 보호

방송매체에서 인권침해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13>과 같다. 방송에서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채널은 채널A로 분석기간 4주 동안 47건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방송의 미준수 사례 210건 중 22.4%에 달하는 수치이다. 채널A 다음으로는 TV조선(38건)과 MBC(35건), JTBC(21건), SBS(20건), 뉴스Y(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방송채널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권보도 준칙을 잘 준수한 채널은 MBN과 KBS로 나왔는데, MBN의 경우 4주 분석기간 동안 인권보도 준칙을 미준수한 건수는 14건이고, KBS는 15건으로 나타났다.

신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나 방송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 유형의 인권보도 미준수 사례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 외에는 ‘아동인권 보호’(38건)와 ‘성평등 보호’(37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24건) 미준수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채널별로는 인권보도 미준수 유형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가령 ‘민주주의와 인권’은 TV조선과 JTBC에서 미준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개인의 인격권 보호’는 채널A와 MBC, SBS, 뉴스Y에서 그리고 ‘성평등 보호’는 KBS와 TV조선, MBN에서, ‘아동인권 보호’는 MBC, TV조선, JTBC에서 미준수 건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3>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 비교: 방송

분석 채널	인권준칙 미준수사례	인권준칙 미준수 1순위	인권준칙 미준수 2순위	인권준칙 미준수 3순위
KBS	15건	성평등 보호 (8건)	민주주의와 인권 (2건)	개인 인격권 보호 (2건)
MBC	35건	개인 인격권 보호 (16건)	아동인권 보호 (16건)	성평등 보호 (2건)
SBS	20건	개인 인격권 보호 (16건)	아동인권보호 (3건)	-
채널A	47건	개인 인격권 보호 (41건)	성평등 보호 (4건)	-
TV조선	38건	민주주의와 인권 (15건)	성평등 보호 (8건)	아동인권 보호 (8건)
MBN	14건	성평등 보호 (4건)	개인 인격권 보호 (3건)	아동인권 보호 (3건)
JTBC	21건	민주주의와 인권 (6건)	아동인권 보호 (6건)	성평등 보호 (4건)
뉴스Y	20건	개인 인격권 보호 (13건)	성평등 보호 (7건)	-
방송 소계	210건	개인 인격권 보호 (97건)	아동인권 보호 (38건)	성평등 보호 (37건)

(4) 인권보도준칙별로 미준수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권보도 미준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인권보도준칙의 영역을 크게 9개로 나누었다. 이는 인권보도 준칙을 토대로 한 것인데, 여기서 제시한 인권보도 영역은 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 준칙, ②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③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④ 성평등 보호 준칙, 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⑥ 노인인권 보호 준칙, ⑦ 아동인권 보호 준칙, ⑧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 준칙, ⑨ 성범죄와 인권보호 준칙 등이다. 여기서는 각 영역별 미준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보도 준칙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는 측면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보도를 했는가의 차원에서 12개 진술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12개 진술문 중에서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진술문은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를 사용했는가?'이다. 가령 사회지도층, 상류층, 중류층, 특권층, 읍소, 접견 등의 표현은 모두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술문에 대한 미준수 건수는 총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25건 보도된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예; 고객, 사은품 등)를 일반화해서 사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가령 언론에서 사은품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외에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로 지적된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24건)한 것으로 만년 야당이나 실력행사, 존지, 떡값이라는 표현 등이 이에 저촉되는 경우이다. 또 통치, 통치권자, 영수회담, 하마평과 같은 권위적인 표현(18건)은 인권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주요 미디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

"때 이른 무더위… 유통업계, 고객모시기 열전" (6월 7일, ○○신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영수 회담이 추진되고, 야당과 정부 간 '당정회의'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6월 7일, ○○신문)

새누리 "민주당은 도청 전문 정당" (6월 27일, ○○방송)

<그림 10> 민주주의와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상위 5위

<표 14>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	① 권위적인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통치, 통치권자, 영수회담, 하마평 등등)	18
	②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사회지도층, 상류층, 중류층, 특권층, 접견, 읍소, 진언 등)	27
	③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금일봉, 물리적 충돌, 단행, 결단, 결행 등)	6
	④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미신고 집회를 불법집회로 표현 등)	9
	소계	60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 보도	①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만년 야당, 공권력 투입, 실력저지, 실력행사, 물리적 저지, 비대가성 성금, 촌지, 떡값 등)	24
	②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 보도나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 사측의 일방적 주장대변 (예: 귀족노조 등) -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을 집중적으로 부각 -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측, 정부, 경찰입장 대변 (예: 합법적 파업임에도 직장폐쇄의 불법성은 외면)	1

	⑥ 계층갈등 조장,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달동네, 명품, 고급, 외제브랜드 옷을 입은 호감형 의 등)	13
	⑦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해서 사용? (예: 고객, 사은품 등)	25
	⑧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촌뜨기, 촌사람, 촌스럽다, 멍청도, 핫바지, 낙동강 오리알, 서울깍쟁이, 보리문둥이 등)	8
	소계	71
합 계		131

②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은 크게 인격권 침해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진술문 11개로 분석하였다. 이중에서 9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2개는 인격권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노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격권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함시킨 두 진술문에 해당하는 사례는 13건으로 아주 적었다. 여기서는 '공인이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동의하에 공개 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사례는 그래도 12건이 나왔는데, '자살사건의 경우 죽은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 했는가'에 해당하는 사례는 494건 중 1건에 불과했다. '공인이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동의하에 공개'한 언론사는 경향신문(6건)과 한겨레(5건), MBC(1건)로 나왔고, '자살사건의 경우 죽은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면서 보도를 한 언론사는 한국일보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이 지적된 예는 바로 '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로 총 90건이 발견되었다. 이는 총 미준수 사례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된 기사 2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로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는 채널A로 33건이나 되었다. 채널A 다음으로는 SBS에서 13건, MBC에서 12건, 한겨레신문에서 12건, 뉴스Y에서 9건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용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나?'(13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묘사를 했는가'(10건), '개인의 질병이나 병명을 주의 없이 공개 했나'(10건) 등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되었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수 사례>

"영훈국제중 교감 자살… 이틀간 휴교" (6월 18일, ○○신문)
영훈국제중 교문에 걸린 김 모 교감을 추모하는 플랜카드를 찍은 사진에서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고인의 인격권을 보호하였음.

<개인의 인격권 보호 미준수 사례>

전씨는 시공사 인수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 945㎡를 포함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아티누스 건물과 토지, 서초동의 여러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6월 4일, ○○신문)

"2년 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막말로 깎아내린 이른바 '가카새끼' 판사, 기억나십니까?"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6월 29일, ○○방송)

"이들은 휴대전화를 개조한 초소형 카메라와 영상 수신기를 동원해 사기도박을 준비했습니다. 화투옆면에 바른 형광물질을 찍어 패를 읽은 뒤 무전기로 전달하는 방식 입니다." (6월 17일, ○○방송)

<그림 11>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상위 5위

<표 15>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인격권 보호	① 공인이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동의하에 공개했는가?	12
	⑦ 자살사건의 경우 죽은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했는가?	1
합 계		13

<표 16> 개인의 인격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인격권 침해	② 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90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침해	3
	④ 공인의 초상권을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했는가? 가령 공인의 초상권을 자료화면 식으로 인용하는 경우임	1
	⑤ 개인의 질병이나 병명을 주의 없이 공개했나?	10
	⑥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는가?	7
	소 계	111

무죄추정의원칙, 기본권 침해 보호	①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예: 제목으로 동생이 빚 독촉하자 살해 등등)	8
	② 용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나? (예: 골프장 사장 납치범 공개 수배 등)	13
	③ 용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했는가?	-
	④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묘사를 했는가?	10
	소 계	31
합 계		142

③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은 크게 장애인 인격권 보호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노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총 18개 진술문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중에서 9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9개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해당 분석기간 동안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보도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사는 서울신문에서 보도되었는데,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장애인 인권보호 준수 사례>

작년 온양여고 2학년 5반 학생들이 청각장애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려고 수화(手話)를 배운 일이 있다. 반면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른 외모나 행동거지를 보면 집요하게 차별하고 괴롭히는 아이도 많다.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은 말이나 캠페인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남에 대한 배려를 작더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교육이다. (6월 21일, ○○신문)

이외에 장애인 인권침해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을 사용한 경우로 5건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어구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4건씩 발견되었고,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3건으로 나왔다. 또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의미(예: 절름발이, 눈뜬장님 등)로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장애인 인권을 위한 미디어의 노력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장애인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장애를 극복해나간다. (6월 8일, ○○신문)

정상인의 제육감은 무의식에 머물지만 절단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제육감은 의식의 세계로 떠올라 '몸이 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6월 8일, ○○신문)

<표 17> 장애인 인권 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④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
	⑤ 장애인 촬영 시 장애부위를 부각하거나 인격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	-
	⑥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 시 신중을 기했는가?	-
	⑦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인식 개선에 노력했는가? -장애인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장애인의 활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묘사하기	1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차원에서 접근하기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 다루지 않기	
합 계		1

<표 18> 장애인 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장애인 인격권 보호	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으로 표현)	5
	②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했는가? (예: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 등)	4
	④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 (예: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	
	⑤ 장애를 질병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사용? (예: 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발달장애를 앓고는 등)	2
	⑥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시각장애에도 성치 않은 몸으로 등)	3
	소 계	14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①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장애를 고치라 등)	4
	③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는 않았는가? (예: 장애인 복지는 사회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내용을 미담으로 보도하는 경우)	-
	소 계	4
합 계		18

④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성평등 보호 준칙은 크게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강화와 성적 대상화, 상품화 보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평등 보호와 관련해서는 총 9개 진술문으로 측정했고, 모두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분석결과, 성평등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해서 표현’한 경우로 성평등 보호관련 미준수 건수 총 126건 중 64건으로 50.8%나 되었다. 이는 2건 중 1건은 바로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33건이 발견되었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표현, 가령 ‘꼬리 친다’거나 ‘앙칼지다’, ‘얼굴마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지적된 사례도 8건이나 되었다. 또 양성에 해당하는 자료 제공시 특정 성만 표현한 경우도 8건 발견되었다.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분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성을 상품화 하는 표현으로 지적된 사례는 4건으로 많지 않았다.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언론사는 한국일보(11건)로 나타났다. 또 성을 상품화한 4건의 보도는 신문에서 1건, 방송에서 3건이 나왔는데, 신문은 세계일보에서, 방송은 TV조선, MBN, 뉴스Y에서 발견되었다.

<성평등 보호 미준수 사례>

SFTS 사망자는 지난해 8월 사망한 여성 박모(63·강원 춘천시)씨와 지난달16일 숨진 강모(73·제주 서귀포시)씨에 이어 모두 4명이다. (6월 4일, ○○신문)

“‘여성정치인이 입은 옷은 정치적 성명을 발표 하는 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중국 방문 패션은 미국 방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습니다.” (6월 28일, ○○방송)

<표 19>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강화	①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했는가? (예: 한국의 여류화가, 여류사진 작가 등)	64
	②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미망인 고일신 여사, 애국지사의 미망인 등)	4
	③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33
	④ 부정적 이미지 연상: 얼굴마담, 타이거우즈의 내연녀, 꼬리친다, 앙칼지다, 여우, 가녀린	8
	⑤ 가부장제에서 전통적 여성역할 강조: 내조외교 등	2
	⑥ 성역할 강화표현: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주부들' (장보기를 여성의 일로만 규정)	3
	⑦ 양성에 해당하는 자료 제공 시 특정 성만 표현	8
	소　계	122
성적 대상화, 상품화 보도	①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예: 꿀벅지, 베이글녀, 쭉쭉빵빵 등)	-
	②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했는가?	4
	소　계	4
합　계		126

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은 크게 다문화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총 7개 진술문으로 측정했는데, 이중에서 6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1개는 다문화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해당 분석기간 동안 다문화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도건수는 3건이 나왔는데 모두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것이었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보호 준수 사례>

"소외·차별받는 다문화 가정 따뜻하게 안아 줄 준비 해야죠" (6월 13일, ○○신문)

한편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는 총 5건이 발견되었는데, 이중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사례는 '특정 국가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총 2건이 발견되었다. 이외에 '이주민을 한국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동정 받아야할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각각 1건씩 나왔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한국식 교육 덕분에…' 할렘 지역 졸업생 전원 대학 진학 (6월 25일, ○○방송)

<표 20>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다문화존중	① 다문화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려고 했는가?	3

<표 21>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다문화 존중	② 특정 국가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살색, 흑진주, 외국인 선수-용병으로 표현 등)	2
	③ 이주민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의 보도를 했는가?	-

	④ 이주민을 한국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동정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했는가?	1
	소 계	3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	①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예: 미등록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표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	1
	②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외국인노동자 이동자제 당부, 살해용의자가 조선족인 듯 등)	1
	③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로 묘사했는가? (예: 외국인 노동자를 구제했다는 식의 보도)	-
	소 계	2
합 계		5

⑥ 노인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노인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분석은 크게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노인의 존엄성 존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노인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분석은 총 7개 진술문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중에서 4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3개는 노인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해당 분석기간 동안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보도건수는 총 2건이 나왔는데, 모두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해법을 제시 했는가'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사였다. 이 문제를 다룬 언론사는 서울신문과 MBN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인인권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3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중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사례는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과 관련된 기사로 2건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은 '노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 표현'으로 1건이 나왔다. 노인 인권보도준칙은 노인을 너무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노인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뉴스미디어는 노인에 대한 이런 감성적 호소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인권 보호 준수 사례>

“늙은 자식, 늙은 배우자에 상습 학대당하는 노인들” (6월 12일, ○○신문)
이 기사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층 빈곤화가 맞물리면서 노인의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고 보고,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을 그 해법으로 제시함.

<노인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말할 자격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어르신들, 젊은이만 보면 여전히 뭔가를 가르치고 훈계하려 드는 꼰대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6월 29일, ○○신문)

<표 22> 노인인권 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노인문제에 접근방식	⑤ 노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는가?	2
노인의 존엄성 존중	①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했는가?	-
	② 노인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문제를 관심 있게 보도했는가?	-
합 계		2

<표 23> 노인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노인문제에 접근방식	①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했는가?	2
	③ 동정의 시선: 독거노인 눈물을 흘리며 서글픈 사연	1
	④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범죄, 자살 등을 개인문제로 접근했는가?	-
합 계		3

⑦ 아동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아동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분석은 크게 어린이 청소년 인권 및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아동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분석은 총 6개 진술문을 토대로 했는데, 이중에서 3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3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분석기간 동안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기사는 단 1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아동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는 총 42건이 발견되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한 경우로 38건이나 되었다. 이는 전체의 90%로 아동인권 보호는 바로 선정적 폭력적인 묘사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그 외에 아동인권과 관련해 제기된 미준수 사례로는 '입양아나 시설아동에게 상처를 줄 표현'을 한 경우가 3건 나왔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1건 발견되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가장 많이 한 채널은 MBC로 나왔다. 총 38건 중 16건이 MBC를 통해 보도된 것이었다. MBC 다음으로는 TV조선(8건), SBS(3건), JTBC(3건), MBN(3건), KBS(2건), 내일신문(2건), 서울신문(1건)의 순으로 나와 선정적 폭력적인 묘사는 주로 방송매체에서 많이 지적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A씨는 한국남성들은 여자 3명이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해놓고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좋아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고백했다. (6월 17일, ○○신문)

"목에 올가미가 채워진 채 끌려갑니다. 아직 숨어 붙어 있어 힘겹게 헐떡입니다. 개의 눈을 감겨줍니다. 사과상자보다 작은 공간에 수많은 개가 들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바닥에는 사체가 즐비합니다." (6월 24일, ○○방송)

<표 24> 아동인권 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어린이 청소년 인권	②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 어린이/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해 보도했는가?	-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 문제	③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했는가?	-
	④ 범죄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았는가?	-
합 계		-

<표 25> 아동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어린이 청소년 인권	①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어린이, 청소년을 무시하는 표현을 썼는가? (예: 초딩, 중딩, 고딩 등)	1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 문제	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했는가?	38
	② 입양아나 시설아동에게 상처를 줄 표현을 했는가? (예: 버림받은 아이들 등)	3
합 계		42

⑧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성적 소수자와 인권 보호준칙은 크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과 성적 소수자를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총 5개 진술문으로 측정했고, 모두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분석결과,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는 총 7건이 나와 총량에서는 많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와 인권 관련 미준수 사례는 두 가지 문제로 집중되었는데, 하나는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경우'(4건)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3건)이다.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언론은 국민일보(2건)와 중앙일보(2건)이고, 성적소수자를 비하하는 보도는

국민일보, 중앙일보, 채널A에서 각 1건씩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

"앞으로 상담과 심리, 생물학자, 정신분석학자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동성애 치료와 치유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 ○○신문)

<표 26>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	① 성적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동성연애, 성적취향,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커밍아웃 사용여부)	3
	②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는가? (예: 동성애를 조장, 동성애 만연, 은밀한, 파문,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동성애에 빠져, 동성애를 즐겨 등)	4
	③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스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
	소 계	7
성적 소수자를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①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질병으로 묘사했는가?	-
	② 에이즈 등 특정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지어 표현했는가? (예: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간염, 성병에 감염 가능, 동성애를 마약중독 등의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시킴)	-
	소 계	-
합 계		7

⑨ 성범죄 보도에서의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성범죄 보도와 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분석은 크게 성범죄에 대한 시선 및 성범죄 보도 행태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성범죄 보도와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 분석은 총 9개 진술문을 토대로 했는데, 이중에서 4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5개는 성범죄 보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뉴스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보도 시 인권을 보호하기 노력으로는 한국일보에서 사회적으로 뉴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범죄 보도를 한 것이 전부였다. 한국일보는 총 4건의 관련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보도와 관련해 인권을 미준수한 사례는 총 20건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범죄의 수법이나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검증 등 수사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한 경우로 9건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은 '성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에서 찾는 보도' 태도로 7건이 나왔다. 특히'범죄의 수법이나 과정, 양태 및 수사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한 언론사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MBC, SBS, 채널A, MBN, JTBC로 각각 1건씩 발견되었다.

<성범죄 보호 준수 사례>

엄마 병원비 벌려다… 당구장 주인에 짓밟힌 알바 소녀 (6월 11일, ○○신문)
1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르바이트 고용주에 대한 보도

<성범죄 보호 미준수 사례>

"육사성폭행 부른 폭탄주 소주30병·맥주72캔 37명이 나눠마셨다." (6월 4일, ○○신문)

"옷을 벗고 춤추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벌리게 했어요." 소녀들은 자신들을 감금한 현지 성매매업자의 눈치를 보며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든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웹카메라 앞에서) 오줌을 누고, 그것을 주스에 섞어서 마셨습니다. 미국인 고객이 원했으니까요." (6월 9일, ○○방송)

<표 27> 성범죄 보도준칙 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성범죄에 대한 시선	① 성범죄 보도가 사회적으로 뉴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4
	②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도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반인권적 범죄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는가?	-
	③ 성범죄 발생 원인을 사회 안정망 부재 및 범죄 예방체제 미비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는가?	-
	소 계	4
성범죄보도 행태	④ 성범죄 보도 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했는가? (예: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공개 여부)	-
	소 계	-
합 계		4

<표 28> 성범죄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성범죄보도 행태	① 성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을 부각했는가? (예: 성범죄 동기를 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탐닉 등으로 접근한 경우)	7
	② 성범죄 보도 시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에 대한 분노 등을 지나치게 조성하지는 않았는가?	2
	③ 성범죄를 피해자의 도덕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했는가?	2
	⑥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는가?	9
합 계		20

2) 뉴스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현황 분석 : 하반기

(1) 개요

하반기 뉴스미디어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현황분석은 2013년 9월 2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주요 일간지와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되었다. 4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 총 기사건수는 27,735건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사례는 총 483건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 이는 상반기 모니터링에서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494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주요 일간지 및 채널별로 살펴보면, 10개 주요 일간지에서 모니터링 한 총 기사건수는 21,664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가 텔레비전 뉴스의 기사건수이다. 이중에서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는 전체의 1.7%에 달하는 483건인데, 이중에서 신문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60.5%이고, 지상파방송은 15.9%, 종합편성채널은 21.3%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신문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신문의 미준수건수가 많이 나온 것은 모니터링 총량에서 신문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각 매체별로 총 기사건수대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의 비율을 보면 신문매체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평균(1.7%)보다 낮은 1.3%에 불과한데 반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3.3%내외로 나왔다.
상반기 분석결과로만 보면, 텔레비전보다는 신문이 인권보도준칙을 상대적으로 잘 지킨다고 볼 수 있으며,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보도전문채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순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9> 매체별 분석대상 기사 수

매체	전체기사 건수 (A)	인권보도 관련 기사건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 (B)	미준수건수대비 % (B/C)	전체기사대비 % (B/A)
신문	21,664건 (78.1%)	292건	60.5%	1.3%
지상파뉴스	2,367건 (8.5%)	77건	15.9%	3.3%

종합편성채널	3,060건 (11.0%)	103건	21.3%	3.4%
보도전문채널	644건 (2.3%)	11건	2.3%	1.7%
합계	27,735건 (100.0%)	483건 (C)	100.0%	1.7%

한편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적된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33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설기사(88건), 기획기사(26건), 단신(22건), 칼럼(12건), 사설(6건), 인물동정(4건)으로 나왔다. 이를 인권보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총 399건인데 이중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미준수한 사례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민주주의와 인권'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8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성평등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7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성평등 보호', '민주주의와 인권'을 미준수한 사례가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한편 해설기사에서는 인권보도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88건 나왔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인권보도 유형은 '개인 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뉴스(36건)였다. 그 다음은 '민주주의와 인권' 및 '성평등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각각 19건으로 2위를 차지해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이 3개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84%나 되었다.

<그림 12> 기사유형별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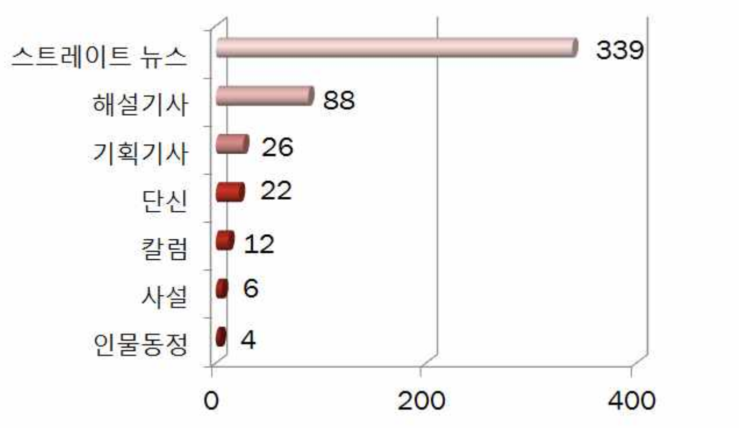

<그림 13>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에서의 인권보도 유형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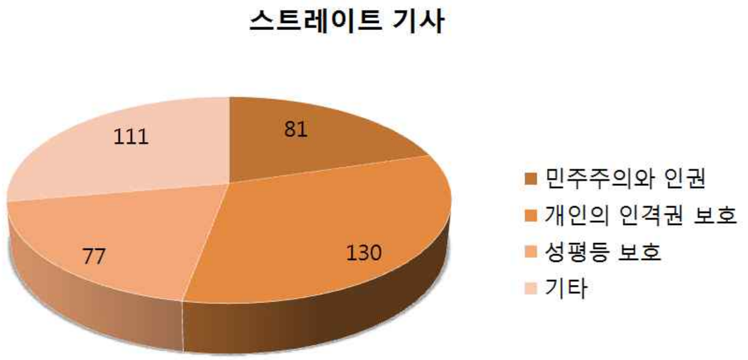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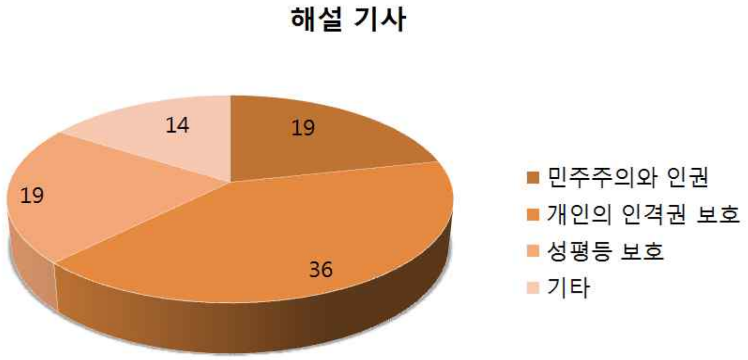

(2) 인권과 관련된 뉴스보도 현황

전체 모니터링 뉴스보도 중에서 인권과 관련이 있는 뉴스보도는 얼마나 되는가? 분석결과 인권문제를 다룬 뉴스보도는 120건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했다. 인권을 다룬 뉴스주제를 살펴보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성폭력, 성범죄 인권'을 다룬 뉴스가 각각 24건씩으로 인권관련 뉴스 중에서 20.7%씩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룬 뉴스가 23건(19.8%)으로 3위를 차지했고, '아동인권 보호'관련 뉴스(10건), '성평등 보호'(9건), '자살보도 인권'(9건), '노인인권 보호'(9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또 인권문제를 다룬 뉴스 중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총 120건 중에서

37건으로 인권관련 뉴스의 30.8%나 차지해 인권문제를 다룬 뉴스가 정착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는 않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인권관련 뉴스에서 인권보도준칙을 미준수한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주주의와 인권'(7건), '성폭력, 성범죄 보호'(6건), '성적소수자 인권'(4건), '아동인권'(3건), '성평등 보호'(3건), '자살보도'(2건), '장애인 인권(2건)', '노인인권'(1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그림 14> 인권관련 뉴스보도 유형(다중응답)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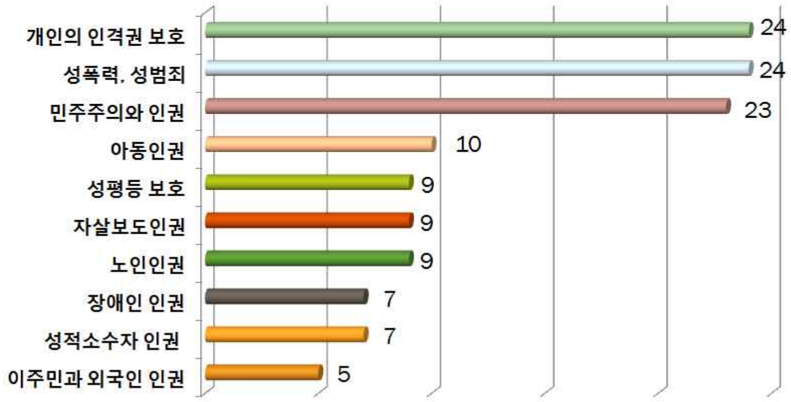

<그림 15> 인권관련 뉴스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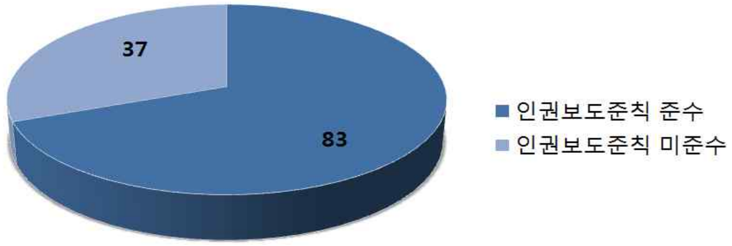

한편 인권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가장 많이 한 매체는 신문으로 나타났다. 인권관련 뉴스의 55.0%가 신문에서 보도되었는데, 특히 조선일보(26건)가 인권관련 뉴스를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다음으로는 중앙일보(17건), 동아일보(14건), 서울신문(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공영방송 KBS가 분석기간 4주 동안 인권관

련 뉴스를 23건 보도해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다음으로는 MBN이 16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SBS는 12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4주간의 분석기간 동안 인권관련 뉴스를 단 1건 보도해 다른 지상파방송과는 차이를 보였다.

<표 30> 매체별, 채널별 인권관련 뉴스보도 현황

신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신문	건수	채널	건수	채널	건수
경향신문	-	KBS	23	채널A	-
국민일보	-	MBC	1	TV조선	-
내일신문	-	SBS	12	MBN	16
동아일보	14			JTBC	-
서울신문	8			뉴스Y	2
세계일보	-				
조선일보	26				
중앙일보	17				
한겨레	1				
한국일보	-				
소계	66건	소계	36건	소계	18건
합계		120건(전체의 0.4%)			

매체별로 주로 다룬 인권관련 보도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31.7%)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반면, 방송에서는 '성폭력 및 성범죄 인권'(20.8%)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뤄 인권보도 유형에서도 매체별 차이를 나타냈다. 신문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다음으로 많이 다룬 인권관련 뉴스보도 유형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25.4%)와 '성폭력, 성범죄'(20.6%) 인권 문제였다. 방송의 경우에는 '성폭력 성범죄 인권'관련 다음으로 많이 다룬 보도유형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15.1%)와 '노인인권'(13.2%), '아동인권'(13.2%), '자살보도와 인권'(13.2%)의 문제였다.

한편 신문과 방송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는 인권관련 뉴스는 ‘장애인 인권’ 및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인권’ 그리고 ‘자살보도 인권’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 매체별 인권보도 유형 (다중응답)

인권관련 보도 유형	신문		방송		전체	
	%	건수	%	건수	%	건수
민주주의와 인권	31.7	20	5.7	3	19.8	23
인격권	25.4	16	15.1	8	20.7	24
장애인 인권	1.6	1	11.3	6	6.0	7
성평등	7.9	5	7.5	4	7.8	9
성폭력, 성범죄	20.6	13	20.8	11	20.7	24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6	1	7.5	4	4.3	5
노인인권	3.2	2	13.2	7	7.8	9
아동인권	4.8	3	13.2	7	8.6	10
성적소수자 인권	6.3	4	5.7	3	6.0	7
자살보도와 인권	3.2	2	13.2	7	7.8	9
전체	100.0	63	100.0	53	100.0	116

(3) 매체별 인권보도 유형별 미준수 사례 현황

그러면 각 매체 및 채널별로 어떤 부분에서 인권보도 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뉴스미디어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인권보도 준칙의 아홉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인권보도 영역은 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②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③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④ 성평등 보호 준칙, 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⑥ 노인인권 보호 준칙, ⑦ 아동인권 보호 준칙, ⑧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 준칙, ⑨ 성범죄와 인권보호 준칙, ⑩ 자살보도와 인권 등이다. 각 유형별 매체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아래 <표 32>와 같다.

전체적으로 뉴스미디어가 인권보도준칙을 가장 많이 미준수한 분야는 바로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으로 나타났다. 총 483건 중에서 174건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미준수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체의 36.0%를 차지한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미준수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말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분석결과 ‘개인의 인격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신문보다는 방송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미준수 사례 총 174건 중에서 신문의 미준수 사례는 55건(31.6%)에 불과한데 반해 방송의 미준수 건수는 119건(68.4%)으로 신문의 2배가 넘었다. 또 방송매체 중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6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상파방송(49건), 연합뉴스Y(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다음으로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 분야는 ‘성평등 보호’와 관련된 보도였다. ‘성평등 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129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주로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를 말하는데, 가령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성평등 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텔레비전보다는 신문에서 많이 나왔는데, 총 129건 중에서 신문에서 104건(80.6%), 방송에서 25건(19.4%)이 발견되었다. 또 방송매체 중에서는 지상파방송에서 13건, 종합편성채널에서 12건을 각각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보도유형은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뉴스였다.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보도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125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보도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이라든가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보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우리 언론은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표현이라든가 권위적인 용어 사용 그리고 특정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보도’ 분야에서는 방송보다는 신문매체의 미준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총 125건 중에서 109건(87.2%)이 신문에서 발견되었다. 또 방송매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 건수는 16건에 불과했는데, 이 16건이 모두 종합편성채널에서 미준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격권보호’, ‘성평등 보호’,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다음으로 미준수 사례가 많이 나온 영역은 바로 ‘아동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이다. ‘아동인권 보호’ 준칙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총 19건의 미준수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 ‘아동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가 신문에서는 한건도 발견되지 않고, 방송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지상파방송에서 8건, 종합편성채널에서 11건이 발견되었다.

이외에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15건, ‘자살보도와 인권’ 보도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12건이 나왔다.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주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신문의 미준수 건수가 10건, 방송은 5건으로 신문의 미준수건수가 방송보다 많이 나왔다. ‘자살보도와 인권’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도 신문에서 7건, 방송에서 5건으로 방송보다는 신문에서의 위반건수가 다소 많았다. ‘장애인 인권’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의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의 위반건수가 종합편성 채널보다 다소 많았는데, ‘자살보도와 인권’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는 종합편성채널의 위반건수가 다소 많았다.

한편 ‘성범죄 보도와 인권’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8건이 나왔다. ‘성범죄 보도와 인권’ 미준수 사례는 주로 성범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리고 성범죄의 수법과 과정 등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매체별로 ‘성범죄 보도와 인권’준칙 미준수는 신문(11건)과 방송(9건)의 미준수 건수가 비슷하게 나왔다. 또 방송에서는 지상파(2건)보다는 종합편성채널(7건)에서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한편 ‘성범죄 보도와 인권’준칙‘(8건), ‘성적소수자와 인권보호’ 준칙(9건),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4건) 그리고 ‘노인인권 보호준칙’(1건)의 미준수 사례는 10건 미만으로 나왔다.

‘성범죄 보도와 인권’ 미준수 사례는 주로 성범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리고 성범죄의 수법과 과정 등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또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사례는 주로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성적소수자를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지어 보도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침해사례는 주로 다문화 인을 비하하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하는 뉴스보도를 말한다. 또 ‘노인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 노인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각 등을 말한다. 이들 분야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적게 나온 것은 이들에 대한 보도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성범죄 보도라든지 성적소수자나 이주민 그리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준칙은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모두 신문에서만 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성범죄 보도와 인권' 미준수 사례는 신문과 방송에서 각각 4건씩의 미준수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신문과 방송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의 유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뉴스미디어가 인권보도준칙을 가장 많이 미준수한 영역은 크게 '개인 인격권 보호'와 '성평등 보호'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의 미준수 정도는 신문과 방송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가령 신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성평등 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반해 방송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가장 많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 비교

분석 채널	인권침해 미준수 사례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1순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2순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3순위
신문 소계	292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 보호	개인 인격권 보호
방송 소계	191	개인 인격권 보호	성평등 보호	아동인권 보호
TOTAL	483	개인 인격권 보호	성평등 보호	민주주의와 인권

<표 33> 매체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인권보도 유형	합계	신문매체 (10개)	방송매채 (8개)	지상파 채널(3개)	종합편성 채널(4개)	보도전문 채널(1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보도준칙	125 (25.8%)	109 (87.2%)	16 (12.8%)	-	16	-
개인의인격권 보호 준칙	174 (36.0%)	55 (31.6%)	119 (68.4%)	49	60	10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15 (3.1%)	10 (66.7%)	5 (33.3%)	3	1	1
성평등 보호준칙	129 (26.7%)	104 (80.6%)	25 (19.4%)	13	12	-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4 (0.8%)	4 (100.0%)	-	-	-	-
노인인권 보호 준칙	1 (0.2%)	1 (100.0%)	-	-	-	-
아동인권 보호 준칙	19 (3.9%)	-	19 (100.0%)	8	11	-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 준칙	9 (1.9%)	9 (100.0%)	-	-	-	-
성범죄와 인권보호 준칙	8 (1.6%)	4 (50.0%)	4 (50.0%)	3	1	-
자살보도와 인권	12 (2.5%)	7 (58.3%)	5 (41.7%)	1	4	-
합계	483 (100.0%)	292 (60.5%)	191 (39.5%)	77	103	11

(3) 일간지 및 채널별 인권보도 유형별 미준수 사례 현황

신문에서 인권보도 준칙을 미준수한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34>와 같다. 신문의 경우 인권보도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신문은 국민일보로 70건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신문 미준수 사례 292건 중 24%에 달하는 수치이다. 국민일보 다음으로는 동아일보(57건), 서울신문(48건), 한국일보(32건), 중앙일보(26건), 조선일보(16건), 내일신문(15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주요 일간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권보도 준칙을 잘 준수한 신문으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들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한겨레에서 인권보도준칙을 미준수한 기사는 2건, 경향신문에서는 8건에 불과했다.

한편 각 신문사별로 미준수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37.3%)와 '성평등 보호'(35.6%)의 보도준칙을 미준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18.8%)을 미준수한 사례가 세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신문사별로 인권보도준칙을 미준수한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은 국민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성평등 보호' 인권을 미준수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반면 서울신문은 '민주주의와 인권'보도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4> 신문의 인권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분석 채널	인권준칙 미준수 사례	인권준칙 미준수 1순위	인권준칙 미준수 2순위	인권준칙 미준수 3순위
경향신문	8건 (2.7%)	성평등 보호 (5건)	개인 인격권 보호 (3건)	-
국민일보	70건 (24.0%)	성평등 보호 (41건)	민주주의와 인권 (23건)	개인 인격권 보호 (7건)
내일신문	15건 (5.1%)	민주주의와 인권 (9건)	성평등 보호 (2건)	성범죄와 인권 (2건)
동아일보	57건 (19.5%)	성평등 보호 (18건)	민주주의와 인권 (16건)	개인 인격권 보호 (15건)
서울신문	48건 (16.4%)	민주주의와 인권 (33건)	성평등 보호 (11건)	자살보도와 인권 (3건)
세계일보	23건 (7.9%)	성평등 보호 (10건)	민주주의와 인권 (7건)	자살보도와 인권 (3건)
조선일보	16건 (5.5%)	개인 인격권 보호 (6건)	성평등 보호 (5건)	민주주의와 인권 (3건)
중앙일보	26건 (8.9%)	개인 인격권 보호 (14건)	민주주의와 인권 (9건)	-
한겨레	2건 (0.7%)	개인 인격권 보호 (1건)	성적 소수자 인권 (1건)	-
한국일보	32건 (10.9%)	성평등 보호 (11건)	개인 인격권 보호 (10건)	민주주의와 인권 (9건)
신문 소계	292건 (100.0%)	민주주의와 인권 (109건)	성평등 보호 (104건)	개인 인격권 보호 (55건)

방송매체에서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35>와 같다. 방송에서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채널은 SBS로 분석기간 4주 동안 48건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방송의 미준수 사례 191건 중 25.1%에 달하는 수치이다. SBS 다음으로는 TV조선(42건)과 채널A(30건), JTBC(21건), KBS(17건), MBC(12건), MBN(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방송채널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권보도 준칙을 잘 준수한 채널은 보도전문 채널인 연합뉴스Y로 나왔는데, 뉴스Y가 분석기간 4주 동안 인권보도 준칙을 미준수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한편 신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나 방송에서는 '개인의 인격권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119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방송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 총 191건 중 62.3%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방송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10건 중 6건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다음으로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가 많은 유형은 '성평등 보호'와 '아동인권 보호'로 '성평등 보호'로는 총 25건의 미준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아동인권 보호'로는 19건이 발견되었다.

또 채널별로는 인권보도 미준수 유형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가령 '민주주의와 인권'은 MBN과 TV조선에서 미준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성평등 보호'는 KBS에서 미준수 건수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외 지상파방송인 MBC와 SBS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와 TV조선, JTBC와 뉴스Y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표 35>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인권보도 유형 비교: 방송

분석 채널	인권준칙 미준수사례	인권준칙 미준수 1순위	인권준칙 미준수 2순위	인권준칙 미준수 3순위
KBS	17건 (8.9%)	성평등 보호 (11건)	장애인 인권보호 (3건)	아동인권 보호 (3건)
MBC	12건 (6.3%)	개인 인격권 보호 (4건)	아동인권 보호 (4건)	성평등 보호 (2건)
SBS	48건 (25.1%)	개인 인격권 보호 (45건)	성범죄와 인권보호 (2건)	-

채널A	30건 (15.7%)	개인 인격권 보호 (19건)	민주주의와 인권 (5건)	성평등 보호 (5건)
TV조선	42건 (22.0%)	개인 인격권 보호 (26건)	아동인권 보호 (7건)	민주주의와 인권 (4건)
MBN	10건 (5.2%)	민주주의와 인권 (6건)	성평등 보호 (4건)	-
JTBC	21건 (11.0%)	개인 인격권 보호 (15건)	아동인권 보호 (4건)	-
뉴스Y	6건 (3.1%)	개인 인격권 보호 (5건)	장애인 인권보호 (1건)	-
방송 소계	191건 (100.0%)	개인 인격권 보호 (119건)	성평등 보호 (25건)	아동인권 보호 (19건)

(4) 인권보도준칙별로 미준수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권보도 미준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인권보도준칙의 영역을 크게 9개로 나누었다. 이는 인권보도 준칙을 토대로 한 것인데, 여기서 제시한 인권보도 영역은 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 준칙, ②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③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④ 성평등 보호 준칙, 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⑥ 노인인권 보호 준칙, ⑦ 아동인권 보호 준칙, ⑧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 준칙, ⑨ 성범죄와 인권보호 준칙 ⑩ 자살보도와 인권 등이다. 여기서는 각 영역별 미준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보도 준칙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는 측면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보도를 했는가의 차원에서 9개 진술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9개 진술문 중에서 미준수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진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예; 고객, 사은품 등)를 일반화해서 사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가령 언론에서 사은품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진술문에 대한 미준수 건수는 45건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보도준칙관련 미준수 건수의 35.4%를 차지했다. 또 이 미준수 45건은 모두 언어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17건 보도된 '계층갈등 조장,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인데, 여기서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으로는 달동네라든가 명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계층갈등 조장, 빈부격차를 정당화' 하는 표현으로 지적된 17건 중 15건은 언어의 문제로 지적된 경우이고, 나머지 2건은 기사의 맥락상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경우이다.

이외에 '권위적인 용어를 사용했는가?'하는 부분과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보도나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15건씩 발견되었다. '권위적인 용어를 사용했는가?'는 주로 언론에서 통치, 통치권자나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15건 모두 언어사용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보도나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거나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경우 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측, 정부, 경찰입장만을 대변한 경우를 말하는데, 미준수 15건 모두 맥락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는 만년 야당이나 실력행사, 촌지, 떡값이라는 표현 등이 이에 저촉되는 경우인데, 이 준칙의 경우에는 미준수 사례 15건 중 13건은 맥락상의 문제로 지적되었고, 2건만 언어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

은행권이 중국인 고객 잡기에 여념이 없다. 은행들이 내국인 중심 영업에서 외국인 고객으로 눈을 돌린 지 꽤 됐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중국인 고객이다. (9월 13일, ○○신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외람스럽게도 한국전쟁 이후 20년 동안 종묘 앞에는 '종삼'(鍾三)이라는 이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집창촌이 기생하고 있었다. (9월 27일, ○○신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대표는 4일 내란음모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또 다른 황당 발언들을 남겼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앞뒤 안 맞는 두 이씨의 언동은 그들이

‘진보를 가장한 꼴통’ 즉 ‘진꼴’임을 보여준다”고 쏘아붙였다. (9월 5일, ○○신문)

<그림 16> 민주주의와 인권보도 준칙 미준수 사례 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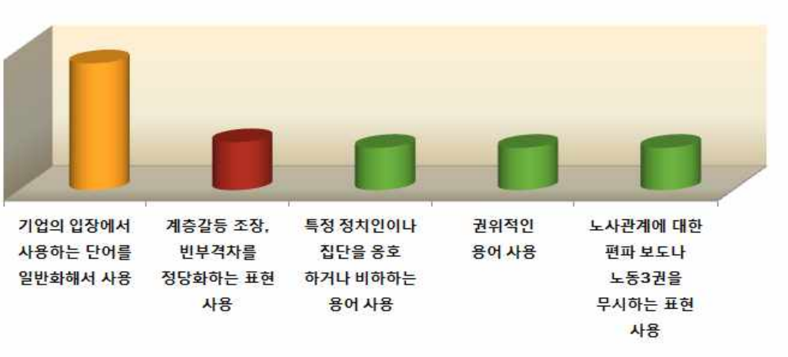

<표 36>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	① 권위적인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통치, 통치권자, 영수회담, 하마평 등등)	15	-	15
	②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사회지도층, 상류층, 중류층, 특권층, 접견, 읍소, 진언 등)	11	-	11
	③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금일봉, 물리적 충돌, 단행, 결단, 결행 등)	5	-	5
	④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예: 미신고 집회를 불법집회로 표현 등)	1	1	-
	소계	32	1	31
특정	①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15	13	2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 보도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만년 야당, 공권력 투입, 실력저지, 실력행사, 물리적 저지, 비대가성 성금, 촌지, 떡값 등)			
	②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 보도나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 사측의 일방적 주장대변 (예: 귀족노조 등) -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을 집중적으로 부각 -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측, 정부, 경찰입장 대변 (예: 합법적 파업임에도 직장폐쇄의 불법성은 외면)	15	15	-
	③ 계층갈등 조장,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달동네, 명품, 고급, 외제브랜드 옷을 입은 호감형의 등)	17	2	15
	④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해서 사용?(예: 고객, 사은품 등)	45	-	45
	⑤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촌뜨기, 촌사람, 촌스럽다, 멍청도, 핫바지, 낙동강 오리알, 서울깍쟁이, 보리문둥이 등)	3	2	1
	소계	95	32	63
합 계		127	33	94

②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은 크게 인격권 침해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진술문 11개로 분석하였다. 이중에서 9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2개는 인격권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노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격권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함시킨 두개의 진술문에 해당하는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이 지적된 예는 바로 ‘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로 총 87건이 발견되었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의 48.9%에 달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된 기사 2건 중 1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것임을 시사 하는 것이다. 또 87건 모두 언어사용의 문제보다는 맥락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로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는 SBS로 45건이 지적되었다. SBS 다음으로는 채널A에서 8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서 각각 4건씩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용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나?’(32건),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했는가’(27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묘사를 했는가’(18건) 등이 개인의 인격권 보호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된 준칙이다.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보도준칙의 경우 상당부분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언어의 문제보다는 맥락상의 문제로 지적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미준수 사례>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바현 산부시의 중고선박수출입회사 부지 안에 보관돼 있던 그물에서 지난달 29일 특정실종자로 분류된 고야마 슌지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체가 발견됐다. (9월 2일, ○○신문)

수천만원대 경주용 보트와 고급 수입차 2대를 보유한 30세 '사장님'이 자기 회사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 회사는 숯 가공 기술 특허를 보유해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납품하는 연매출 7억~8억 원대 기업이다. (9월 14일, ○○신문)

정씨가 모자가 실종되기 전 면장갑 2개, 청테이프 4개 세정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종된 어머니 김 씨는 실종되기 전 "차남이 지난 7월 5000만원~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3일, ○○신문)

<그림 17>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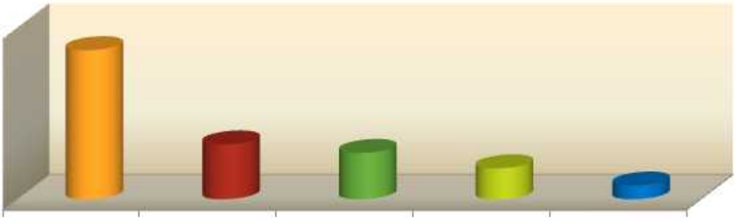

<표 37>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인격권 보호	① 공인이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동의하에 공개했는가?	-	-	-
	⑦ 자살사건의 경우 죽은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했는가?	-	-	-
합 계		-	-	-

<표 38> 개인의 인격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인격권 침해	② 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87	87	-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침해	-	-	-
	④ 공인의 초상권을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했는가? 가령 공인의 초상권을 자료화면 식으로 인용하는 경우임	-	-	-

	⑤ 개인의 질병이나 병명을 주의 없이 공개했나?	5	5	-
	⑥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는가?	8	8	-
	소 계	100	100	-
무죄추정의 원칙, 기본권 침해 보호	①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예: 제목으로 동생이 빚 독촉하자 살해~~등등)	27	26	1
	② 용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나? (예: 골프장 사장 납치범 공개 수배 등)	32	31	1
	③ 용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했는가?	1	1	-
	④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묘사를 했는가?	18	18	-
	소 계	78	76	2
합 계		178	176	2

③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장애인 인권보호 준칙은 크게 장애인 인격권 보호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노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총 11개 진술문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중에서 7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4개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해당 분석기간 동안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보도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사는 세계일보에서 2건, SBS에서 1건이 보도되었는데, 모두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장애인 인권보호 준수 사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들이야말로 사회와 이웃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통을 나누진 못한다 해도 이웃 주민으로 성폭행을 일삼았으니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법정 최고형으로 이들을 다스려 경계로 삼아야 한다. (9월 13일, ○○신문)

이외에 장애인 인권침해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6건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 어구를 사용’한 경우가 5건 발견되었다. 그 외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각각 2건씩 나왔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장애인 인권을 위한 미디어의 노력도 찾아볼 수는 없었다. 또 장애인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는 언어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준수 사례 총 16건 중 언어사용의 문제로 지적된 사례가 13건, 문맥이 문제가 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장애인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

그가 과대망상 정신질환 발달장애라며 깔아뭉개고 싶은 모양이다. 강성대국 외치는 북한 김정은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지도 못할 그들이다. (9월 9일, ○○신문)

어쩌다 종북 외에는 더 이상 꿀 꿈도, 바칠 열정도 없어 보이는 외눈박이 전사가 됐나. 진작에 자취를 감췄어야 할 화석화된 종북이념 집단이 활개를 치는 것은 우리의 진보토양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얘기다. (9월 12일, ○○신문)

<표 39> 장애인 인권 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기사	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④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	-	-
	⑤ 장애인 촬영 시 장애부위를 부각하거나 인격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	-	-	-
	⑥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 시 신중을 기했는가?	-	-	-
	⑦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인식 개선에 노력했는가? -장애인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장애인의 활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묘사하기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차원에서 접근하기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 다루지 않기	3	3	-
합 계		3	3	-

<표 40> 장애인 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장애인 인격권 보호	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예: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으로 표현)	6	1	5
	②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했는가? (예: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 등)	5	1	4
	④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 (예: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	-	-	-

	⑤ 장애를 질병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사용? (예: 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발달장애를 앓고는 등)	1	-	1
	⑥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시각장애에도 성치 않은 몸으로 등)	2	-	2
	소 계	14	2	12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①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장애를 고치라 등)	2	1	1
	③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는 않았는가? (예: 장애인 복지는 사회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내용을 미담으로 보도하는 경우)	-	-	-
	소 계	2	1	1
합 계		16	3	13

④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성평등 보호 준칙은 크게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강화와 성적 대상화, 상품화 보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평등 보호와 관련해서는 총 9개 진술문으로 측정했고, 모두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분석결과, 성평등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해서 표현'한 경우로 성평등 보호관련 미준수 건수 총 133건 중 31건으로 23.3%나 되었다. 그 다음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표현, 가령 '꼬리 친다'거나 '앙칼지다', 얼굴마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지적된 사례로 27건이나 되었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나 '성역할을 강화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각각 23건씩으로 나왔다.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분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성을 상품화 하는 표현으로 지적된 사례는 12건으로 많지 않았다.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언론사는 국민일보로 38건이나 발견되었다. 그 다음은 동아일보가 15건, 한국

일보 11건, 서울신문 10건, 세계일보 10건이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KBS에서 11건이 발견되었다.

성평등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의 경우 언어사용의 문제와 맥락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3건 중 맥락이 문제된 사례가 64건으로 48.1%를 차지했고, 나머지(69건) 51.0%는 언어사용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평등 보호 미준수 사례>

스릴러, 액션물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영화에서 여배우의 활용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들이 나오면 여배우 갈증이 좀 풀리려나, 암탉이 울어야 한국영화가 풍성해진다. (9월 26일, ○○신문)

‘패션테러리스트’와 ‘완판녀’사이, 이 큰 간극 속에서 박대통령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취임 후 6개월. 대한민국 패션전문가들이 내린 ‘박근혜 패션정치’의 성적은 몇 점일까. 최근 박대통령에 대한지지율(60~70%)보다는 낮고 지난 대선지지율(52%)보다는 높은 수준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9월 7일, ○○신문)

<표 41> 성평등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강화	①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했는가? (예: 한국의 여류화가, 여류사진 작가 등)	31	4	27
	②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미망인 고일신 여사, 애국지사의 미망인 등)	3		3
	③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23	17	6

	④ 부정적 이미지 연상: 얼굴마담, 타이거우즈의 내연녀, 꼬리친다, 앙칼지다, 여우, 가녀린	27	4	23
	⑤ 가부장제에서 전통적 여성역할 강조: 내조외교 등	3	1	2
	⑥ 성역할 강화표현: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주부들' (장보기를 여성의 일로만 규정)	23	19	4
	⑦ 양성에 해당하는 자료 제공 시 특정 성만 표현	11	10	1
	소 계	121	55	66
성적 대상화, 상품화 보도	①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꿀벅지, 베이글녀, 쭉쭉빵빵 등)	7	4	3
	②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했는가?	5	5	-
	소 계	12	9	3
합 계		133	64	69

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은 크게 다문화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총 7개 진술문으로 측정했는데, 이중에서 6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1개는 다문화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해당 분석기간 동안 다문화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도건수는 단 2건이 나왔는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서 각각 1건씩 보도된 것이었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보호 준수 사례>

안산원곡초는 최근 들어 다문화 학생들의 모국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학생들의 향후 진로를 고려한 조치다. 임영택 교장은 "학생들이 커서 회사 주재

원이나 외교관이 됐을 때 언어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면 장점이 된다"며 "학교 차원에서 모국어 능력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부모와 상담할 땐 각 가정에서 모국어 쓰는 것을 추천한다. (9월 14일, ○○신문)

한편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는 총 4건이 발견되어 이주민 및 외국인 인권보호준칙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그나마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사례는 '특정 국가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로 각각 2건씩이 발견되었다.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고생 4명으로, 시간을 쪼개 검은대륙 어린이들에게 보낼 동화책을 손수 만들었다. (9월 4일, ○○신문)

<표 42>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기사	준수 이유	
			맥락문제	언어문제
다문화존중	① 다문화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려고 했는가?	2	2	-

<표 43>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문제	언어문제
다문화존중	② 특정 국가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살색, 흑진주, 외국인 선수-	2	1	1

	용병으로 표현 등)			
	③ 이주민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의 보도를 했는가?	-	-	-
	④ 이주민을 한국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동정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했는가?	-	-	-
	소 계	2	1	1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	①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예: 미등록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표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	2	2	-
	②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외국인노동자 이동자제 당부, 살해용의자가 조선족인 듯 등)	-	-	-
	③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로 묘사했는가? (예: 외국인 노동자를 구제했다는 식의 보도)	-	-	-
	소 계	2	2	-
합 계		4	3	1

⑥ 노인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노인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분석은 크게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노인의 존엄성 존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노인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분석은 총 6개 진술문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중에서 3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3개는 노인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해당 분석기간 동안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보도건수는 총 6건이 나왔는데,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해법을 제시 했는가’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사가 3건,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 했는가’ 하는 기사가 3건 나왔다.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언론사는 내일신문(2건)과 KBS(1건)로 나왔고,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동아일보(1건), 한국일보(1건), 채널A(1건)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인권 준칙을 미준수한 사례는 1건이 지적되었는데, '노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노인 인권보도준칙은 노인을 너무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노인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뉴스미디어는 노인에 대한 이런 감성적 호소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인권 보호 준수 사례>

"노인 우울증 급증…실태와 대책은?" (9월 2일, ○○방송)

<노인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정영덕(무안2) 의원은 "농촌 벽지에 있는 역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자동 시스템을 잘 갖춘다 한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9월 4일, ○○신문)

<표 44> 노인인권 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노인문제에 접근방식	⑤ 노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는가?	3	3	-
노인의 존엄성 존중	①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했는가?	3	2	1
	② 노인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문제를 관심 있게 보도했는가?	-	-	-
합 계		6	5	1

<표 45> 노인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노인문제에 접근방식	①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했는가?	-	-	-
	③ 동정의 시선: 독거노인 눈물을 흘리며 서글픈 사연	1	1	-
	④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접근했는가?	-	-	-
합 계		1	1	-

⑦ 아동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아동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분석은 크게 어린이 청소년 인권 및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아동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분석은 총 6개 진술문을 토대로 했는데, 이중에서 3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3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분석기간 동안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기사는 2건으로 나왔다. 이 같은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내일신문과 서울신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는 19건이 발견되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한 경우로 17건이나 지적되었다. 이는 전체의 89%로 아동인권 보호는 바로 선정적 폭력적인 묘사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또 17건 모두 맥락상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그 외에 아동인권과 관련해 제기된 미준수 사례로는 '입양아나 시설아동에게 상처를 줄 표현'을 한 경우로 2건 나왔는데, 모두 언어 사용이 문제된 경우이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가 문제로 지적된 경우는 모

두 방송매체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인권보도준칙을 가장 많이 지키지 않은 방송사는 TV조선으로 7건을 지적받았다. 그 다음은 MBC와 JTBC 뉴스에서 각각 4건씩 발견되었고, KBS와 SBS뉴스에서도 1건씩 지적되었다.

<아동인권 보호 미준수 사례>

“시리아 반군 ‘포로 총살 영상’ 공개…美 공습 새 변수?” (9월 6일, ○○방송)

친구가 목을 조르자, 이내 정신을 잃습니다. "으하하하" (기절했어?) 수 년 전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등장한 이른바 '기절놀이'입니다. 문제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위험한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 18일, ○○방송)

<표 46> 아동인권 보호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어린이 청소년 인권	②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 어린이/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해 보도했는가?	2	2	-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 문제	③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했는가?	-	-	-
	④ 범죄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았는가?	-	-	-
합 계		2	2	-

<표 47> 아동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어린이 청소년 인권	①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어린이, 청소년을 무시하는 표현을 썼는가? (예: 초딩, 중딩, 고딩 등)	-	-	-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 문제	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했는가?	17	17	-
	② 입양아나 시설아동에게 상처를 줄 표현을 했는가? (예: 버림받은 아이들 등)	2	-	2
합 계		19	17	2

⑧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성적 소수자와 인권 보호준칙은 크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과 성적 소수자를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총 5개 진술문으로 측정했고, 모두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분석결과,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는 총 10건이 나와 총량에서는 많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와 인권관련 미준수 사례는 두 가지 문제로 집중되었는데, 하나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6건)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경우’(3건)이다.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6건 중 5건이 언어사용의 문제로 지적받았고,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경우’는 맥락상의 문제로 지적받았다.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언론사는 주로 신문사로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에서 각각 1건씩 발견되었고,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언론사는 동아일보(2건)와 조선일보(1건)로 나타났다.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

동성 성관계에 빠지는 10대 소년은 단순히 성 경험을 해보고 싶은 수단으로 동성애를

택하곤 한다. 동성 섹스파트너를 구한다는 한 10대 소년은 “여성과 성관계를 해본적은 없지만 섹스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다. 여자보다 비슷한 호기심을 가진 또래남성이 성 경험을 하기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홍봉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미처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성적 호기심만으로 동성애를 접하다보면 성인이 되더라도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나 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월 11일, ○○신문)

<표 48>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	① 성적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동성연애, 성적취향,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커밍아웃 사용여부)	6	1	5
	②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는가? (예: 동성애를 조장, 동성애 만연, 은밀한, 파문,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동성애에 빠져, 동성애를 즐겨 등)	3	3	-
	③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스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	-	-
	소 계	9	4	-
성적 소수자를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①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질병으로 묘사했는가?	-	-	-
	② 에이즈 등 특정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지어 표현했는가? (예: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간염, 성병에 감염가능, 동성애를 마약 중독 등의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시킴)	1	1	-
	소 계	1	1	-
합 계		10	5	5

⑨ 성범죄 보도에서의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성범죄 보도와 인권 보호준칙 미준수 사례분석은 크게 성범죄에 대한 시선 및 성범죄 보도 행태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성범죄 보도와 인권보호 미준수 사례 분석은 총 8개 진술문을 토대로 했는데, 이중에서 4개는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 4개는 성범죄 보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성범죄 발생 원인을 사회 안정망 부재 및 범죄예방체제 미비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한 뉴스보도는 단 3건이 나왔는데 2건은 세계일보에서 1건은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경우이다.

성범죄 보도와 관련해 인권을 미준수한 사례는 8건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범죄의 수법이나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검증 등 수사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한 경우로 6건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은 '성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에서 찾는 보도' 태도로 2건이 나왔다. 특히 '범죄의 수법이나 과정, 양태 및 수사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한 언론사는 동아일보(2건), 내일신문(2건), MBC(1건), SBS(1건)로 나타났다.

<성범죄 보호 준수 사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노리개쯤으로 여긴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한마디로 장애 여성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주민 6명을 성범죄로 내몬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월 13일, ○○신문)

<성범죄 보호 미준수 사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자신들이 투숙해 있던 강원속초시의 한 펜션에서 여주인 A씨(54·여)를 납치했다. 이들은 A씨에게 '놀러가자'고 유인해 A씨

의 차량을 타고 펜션을 빠져 나온 뒤돌 변했다. 다음날 오전 4시 20분경 A씨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인근야산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뒤 얼굴에 비닐을 씌워 질식사시켰다. A씨의 시신 앞에서 제사를 지내듯 절까지 한 이들은 사체를 풀숲에 유기한 채 A씨의 차를 타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 이들이 A씨에게서 빼앗은 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9월 3일, ○○신문)

도박 빚을 진 남성은 돈을 빼앗을 생각과 성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9월 27일, ○○방송)

<표 49> 성범죄 보도준칙 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관련 기사	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성범죄에 대한 시선	① 성범죄 보도가 사회적으로 뉴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	-	-
	②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도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반인권적 범죄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는가?	-	-	-
	③ 성범죄 발생 원인을 사회 안정망 부재 및 범죄예방·체지 미비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는가?	3	3	-
	소 계	-	-	-
성범죄보도 행태	④ 성범죄 보도 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했는가? (예: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공개 여부)	-	-	-
	소 계	-	-	-
합 계		3	3	-

<표 50> 성범죄 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 문제
성범죄 보도 행태	① 성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을 부각했는가? (예: 성범죄 동기를 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탐닉 등으로 접근한 경우)	2	2	-
	② 성범죄 보도 시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에 대한 분노 등을 지나치게 조성하지는 않았는가?	-	-	-
	③ 성범죄를 피해자의 도덕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했는가?	-	-	-
	⑥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는가?	6	6	-
합 계		8	8	-

⑩ 자살보도와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자살보도준칙은 하반기 뉴스 모니터링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이다. 자살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은 총 6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했고, 모두 미준수 사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분석결과, 자살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는 총 12건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자살자의 이름,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 보도’한 경우로 9건이 지적되었다. 그 다음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한 경우로 2건이 발견되었다. 또 ‘자살 사건을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룬 경우는 1건으로 나왔다.

가장 미준수 사례가 많이 나온 ‘자살자의 이름,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 보도’한 언론사는 TV조선(3건), 서울신문(3건), 세계일보(2건)로 나타났다. 또 ‘자살 보도 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는

동아일보(1건)와 세계일보(1건)로 나왔고, '자살 사건을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뤄 지적받은 언론사는 MBC(1건)로 나왔다.

<표 51> 자살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분석 (단위: 건수)

보도내용 관련여부	미준수 건수	미준수 이유	
		맥락 문제	언어문제
① 자살 보도 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는가? 특히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이 공공의 관심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보도했는가?	2	2	-
② 자살자의 이름,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는 보도를 했는가?	9	6	3
③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는가?	-	-	-
④ 자살을 영웅시하거나 혹은 미화하면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는가?	-	-	-
⑤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지도 않고,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일반화하여 보도했는가?	-	-	-
⑥ 자살 사건을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었는가?	1	1	-
합 계	12	9	3

6.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2011년 ‘인권보도준칙’(2011.9.23.)을 제정하고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인권도보도 준칙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미디어 뉴스가 인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일반인들이 소수자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뉴스는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력도 없고 또 2011년 9월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디어 현장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정된 인권보도 준칙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 언론의 인권보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 준칙에 근거하여 신문과 방송의 뉴스미디어들이 인권보도준칙에 기준해볼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매체별로 인권보도의 준수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인권보도준칙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미디어가 인권보도를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10개 중앙일간지와 3개 지상파방송 그리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인권보도준칙 준수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언론계 내부의 인권보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신문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중에 보도된 모든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외부 필진이 기고한 기사만 제외하였다. 방송의 경우에는 8개 채널(KBS1,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연합뉴스Y)의 저녁 종합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모니터링은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뉴스 모니터링 기간을 6월과 9월로 설정한 이유는 특별한 계절적 정치적 이슈가 없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특정한 이슈가 없는 기간을 선정해 모니터링 분석을 할 경우 일상적인 뉴스보도의 인권보도준칙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뉴스모니터링 외에 인권보도준칙 활용과 관련해 기자집단의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초

점집단 인터뷰의 경우 10명을 대상으로 했고, 기자집단 설문조사는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가 신문과 방송 기자집단의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권보도준칙 활용에 대한 기자집단의 의견으로 참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① 뉴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요약

○ 2013년 6월과 9월에 실시한 신문과 방송매체의 뉴스 모니터링 분석결과, 6월의 분석대상 기사 수는 31,013건이고, 9월의 분석대상 기사건수는 27,735건으로 나왔다. 이중에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 수는 6월에는 494건, 9월에는 483건으로 각각 1.6%와 1.7%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다.

○ 이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6월의 경우 신문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비율은 1.1%이고, 지상파방송은 3.0%, 종합편성채널은 3.7%, 보도전문채널은 3.4%로 신문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비율이 방송에 비해 낮게 나왔다. 9월의 결과도 6월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신문의 미준수 비율은 1.3%, 지상파방송은 3.3%, 종합편성채널은 3.4%, 보도전문채널은 1.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3년 6월(4주)			2013년 9월(4주)		
	전체기사 건수	인권보도 미준수 건수	전체기사 대비 미준수 비율	전체기사 건수(A)	인권보도 미준수건수(B)	전체기사 대비 미준수 비율(B/A)
신문	24,871건	284건	1.1%	21,664건 (78.1%)	292건	1.3%
지상파 뉴스	2,293건	69건	3.0%	2,367건 (8.5%)	77건	3.3%
종합편성 채널	3,265건	121건	3.7%	3,060건 (11.0%)	103건	3.4%
보도전문 채널	584건	20건	3.4%	644건 (2.3%)	11건	1.7%

합계	31,013건	494건	1.6%	27,735건 (100.0%)	483건	1.7%

○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실태는 총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9월 하반기 모니터링 시에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추가하여 총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뉴스의 언론보도준칙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인권보도준칙을 가장 많이 미준수한 영역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민주주의와 인권 및 성평등 보호가 비슷한 수준에서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외로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많지 않았는데, 가령 노인인권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모두 각각 3건, 1건에 불과했고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미준수 건수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5건, 4건으로 인권침해 건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10건 미만으로 전체 미준수 기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내외로 아주 미미했다. 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아동 인권이나 장애인 인권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신문과 방송의 매체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한 미준수 건수는 신문매체에서 많이 발견된 반면, 개인의 인격권 침해 건수는 신문보다는 방송에서 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 성평등 보호 인권의 경우에는 신문매체에서 더 문제가 심각했고 아동인권보호준칙 미준수는 주로 방송매체에서 위반사례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인권보도 유형	합계		신문(10개)		방송(8개)	
	6월	9월	6월	9월	6월	9월
민주주의와 인권	131 (26.5%)	125건 (25.8%)	107 (81.7%)	109건 (87.2%)	24 (18.3%)	16건 (12.8%)
개인의 인격권 보호	142 (28.7%)	174건 (36.0%)	45 (31.7%)	55건 (31.6%)	97 (68.3%)	119건 (68.4%)
장애인 인권 보호	18 (3.6%)	15건 (3.1%)	16 (88.9%)	10건 (66.7%)	2 (11.1%)	5건 (33.3%)
성평등 보호	126 (25.5%)	129건 (26.7%)	89 (70.6%)	104건 (80.6%)	37 (29.4%)	25건 (19.4%)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보호	5 (1.0%)	4건 (0.8%)	4 (80.0%)	4건 (100.0%)	1 (20.0%)	-
노인인권 보호	3 (0.6%)	1건 (0.2%)	3 (100.0%)	1건 (100.0%)	-	-
아동인권 보호	42 (8.5%)	19건 (3.9%)	4 (9.5%)	-	38 (90.5%)	19건 (100.0%)
성적 소수자와 인권보호	7 (1.4%)	9건 (1.9%)	5 (71.4%)	9건 (100.0%)	2 (28.6%)	-
성범죄와 인권보호	20 (4.0%)	8건 (1.6%)	11 (55.0%)	4건 (50.0%)	9 (45.0%)	4건 (50.0%)
자살보도와 인권	-	12건 (2.5%)	-	7건 (58.3%)	-	5건 (41.7%)
합계	494 (100.0%)	483건 (100.0%)	284 (57.5%)	292건 (60.5%)	210 (42.5%)	191건 (39.5%)

*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실태는 6월 상반기에는 조사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의하여 2013년 9월 모니터링 당시에만 인권보도준칙의 한 영역으로 조사되었음.

○ 방송에서 인권보도준칙 침해 사례가 많은 '개인 인격권 보호 준칙'과 '성평등 보호'준칙 그리고 '아동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뉴스Y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을 미준수율은 종합편성채널이 5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상파채널로 38.4%를 나타냈다. 또 성평등 보호준칙 미준수율도 종합편성채널이 51.6%로 지상파방송의 37.1%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예상대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및 성평등 보호 준칙에서는 신생채널인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방송보다는 미준수율이 다소 높게 나왔다. 그러나 아동인권 준칙 미준수율은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지상파방송이 종합편성채널보다 1건 더 많이 발견되어 지상파방송에서의 아동의 인권보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보도 유형		방송매채 (8개)	지상파채널 (3개)	종합편성 채널(4개)	보도전문 채널(1개)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	6월	97	34	50	13
	9월	119	49	60	10
	소 계	216(100.0%)	83(38.4%)	110(50.9%)	23(10.6%)

성평등 보호준칙	6월	37	10	20	7
	9월	25	13	12	-
	소 계	62(100.0%)	23(37.1%)	32(51.6%)	7(11.3%)
아동인권 보호 준칙	6월	38	21	17	-
	9월	19	8	11	-
	소 계	57(100.0%)	29(50.9%)	28(49.1%)	-

② 언론인 FGI 결과 요약

○ 언론인 FGI는 크게 세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생각, 둘째는 취재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셋째는 인권보도준칙이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보도준칙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았다. 언론인들의 생각을 각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 인권보도 준칙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몰랐다는 답변을 했다. 혹은, 신문협회 기사를 통해서 제정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준칙의 내용을 찾아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 심층인터뷰를 위해 인권보도준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인권보도준칙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물어본 결과, 인권보도준칙의 낮은 인지율과는 대조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기자들은 그런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유이다.
- 또 인터뷰에 참가한 기자들은 현재 인권보도준칙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기자로써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지만 이목을 끌어야 된다는 미디어적 특성 때문에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쉽기 때문에 세세하게 명시된 인권보도 준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취재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 앞서 인권보도준칙의 인지여부를 논하는 질문에 인터뷰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모른다'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인권보도준칙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다만 인권보도준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무엇보다 준칙에 대

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 그러나 인권보도준칙을 숙지한 상태에서도 준칙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권보도준칙을 자살보도준칙과 동일한 수준에 놓지는 않았다. 즉,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당장에 누군가가 해를 입고, 기자가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준수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인권보도준칙이 시행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 인권보도준칙의 실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준칙 제정 기관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준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의견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동의했다. 특히, 평기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데스크들에게 인권보도준칙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효과적으로 홍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첩을 제작하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인권보도준칙을 앞쪽에 배치시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인권보도준칙만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사례를 통해 인권보도준칙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인권보도준칙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 제정된 인권보도준칙 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면 하나는 인권보도준칙 유형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사소한 것을 문제 삼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 우선 인권보도준칙 유형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보도준칙의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인권보도준칙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인데 반해 다른 인권보도준칙은 주제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사소한 것을 문제 삼음으로써 인권보도준칙의 준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가령 인터뷰 현장에서는 '고객'이라는 단어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인권보도준칙을 보면 고객이라는 용어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용어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단어가 된다. 그러나 기자입장에서도 또 수용자 입장에서도 고객이라는 단어가 수용자를 비하하는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보도준칙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가 수시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인권보도준칙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는 의견도 일었다.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당시보다

현재 사회적으로 더 문제되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교와 북한인권, 지역색과 정치성향 그리고 외모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③ 언론인 설문조사 결과

○ 언론인 설문조사도 언론인 FGI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FGI가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면 언론인 설문조사는 50명으로 FGI보다는 다소 많은 인권이 참가한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여부
- 조사대상 기자 집단의 약 94%가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에 대한 인지율은 77.3%이고,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인지율은 81.6%의 인지율로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세부 권고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인권보도준칙 및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인지정도
- 전체적으로 기자 10명중 9명은 인권보도준칙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기사 작성 시 인권보도준칙을 참고하는 기자는 10명중 2명에 불과해 현재 언론사 기자들에게 있어 인권보도준칙의 활용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권보도준칙은 다른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이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비해 참고한다는 응답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그러나 조사에 응한 50명의 기자 중에서 48명은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나머지 2명의 기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 이러한 조사결과로 미루어볼 때, 현재 기자들은 인권보도준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활용하고 있지도 않지만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도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④ 취재 현장에서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및 미준수 이유
- 취재현장에서 인권보도준칙을 '별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잘 지키는 준칙도 있고 그렇지 않은 준칙도 있다'(32%)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해 아직까지 인권보도준칙은 취재현장에서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왜 인권보도준칙이 취재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지를 물어본 문항에서는 '시간이 쫓기다보니' 참고할 수 없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잘 몰라서'(32.7%), '기사작성에 타성이 붙어서'(32.7%), '튀고자 하는 기자욕심 때문에'(22.4%)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2) 정책제언

2013년 처음 실시한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월과 9월의 두 번의 모니터링에서 미준수건수가 각각 1.7%, 1.6%로, 이는 100건의 뉴스기사 중 1-2건 정도만 인권보도준칙을 미준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 매체별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언론이 인권보도준칙의 안전지대에 남겨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선 가장 미준수건수가 많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준칙의 경우 9월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만 보아도 종합편성채널에서의 미준수 건수가 60건으로 나왔는데, 이 60건은 28일 동안 조사된 것으로 종합편성채널 뉴스를 시청하는 시청자는 매일 2건 이상의 개인 인격권 침해뉴스를 시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상파방송의 미준수 건수 49건까지 더하면 개인의 인격권침해 건수가 109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청자는 매일 텔레비전 종합뉴스를 통해 약 4건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뉴스를 시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뉴스가 사회현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만 가지고 인권보도준칙의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를 통해서 언론이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모든 언론인이 인권보도준칙을 내재화하고, 인권보도가 개인 언론인을 넘어 언론사 조직에서 중요한 게이트키핑(gatekeeping)의 기준이 될 때까지 다양한 제도적 보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와 언론인 FGI 그리고 언론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11년에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언론인 FGI에서도 제시되었는데,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문제로 제시한 사례들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령 인권보도준칙의 민주주

의와 인권부분은 통치권자를 높이는 표현이라든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고객이라는 용어를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표현을 찾기도 어렵고 고객이라는 용어에 대해 일반인들의 거부감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니터링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부분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건수는 대부분 용어의 문제였지 맥락상이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인권보도준칙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수정 보완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정된 다양한 분야의 인권보도준칙의 현실적 중요성 및 현실과의 괴리감 정도를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갖기 어려운 인권보도 준칙은 삭제하고, 현재의 인권보도준칙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인권보도준칙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으로는 종교와 북한인권, 지역색과 정치성향 그리고 외모만을 중시하는 풍조라는 의견이 언론인 FGI에서 제시되었다.

둘째, 인권보도준칙이 현실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 이슈별로 인권보도 준칙이 얼마나 잘 준수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올해 실시한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는 선거 등의 특정한 이벤트가 없는 6월과 9월에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했다. 그런데 인권보도라는 것은 특정한 이슈별로 위반사례가 증감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인권보도준칙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현실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상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이 준수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보도준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슈에서 인권보도준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바쁜 언론인들에게 인권보도준칙을 알리고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인권보도준칙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론유관기관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우선 언론진흥재단과 연계하여 언론인 재교육 및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강의를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언론인들이 인권보도에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방송사 심의실과 연계하여 인권보도준칙 준수실태를 방송사 자체 심의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자율심의규정을 제정하여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에 이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인권보도준칙의 일부가 방송사의 심의규정에 포함된다면 방송매체에서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율을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소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는데, 방송매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규정에 인권보도준칙 준수율을 포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권보도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공표도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인권보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에게 수상하는 ‘인권보도상’ 수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거나 수상작은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언론사에게 배포하고 좋은 사례로 축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NGUYEN THI HIEN TRANG,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한겨레」및「조선일보」보도의 비교 분석" (성공회대:석사논문, 2009), p.46.

정진우, “한국 미디어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보도 경향과 인식 연구” (성균관대:석사논문, 2004), p.59.

백선기, “한국 언론의 ‘소수자·약자’ 보도 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 (한국방송학회 2006 봄철 정기학술대회발표자료), p.16-18.

육정수, “신문보도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석사논문, 2001), p.95-102.

부록

모니터링 도구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의식조사

<부록1> 모니터링 도구

인권보도 지침 신문, 방송 모니터링 도구

문1. 분석일 :

월	일	일	채널	채널	건수	건수	건수
9	0	2	0	1	0	0	1

(9월, 05일, 경향신문: 01, 기사번호: 01)

문2. 분석요일 :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문3. 분석매체 :

① 신문 ② 지상파방송 ③ 종합편성채널 ④ 보도전문채널

문4. 분석채널

신문(1)		지상파방송(2)		종편 및 전문보도채널(3)	
코드	신문명	코드	채널명	코드	채널명
1	경향신문	11	KBS	14	채널A
2	국민일보	12	MBC	15	TV조선
3	내일신문	13	SBS	16	MBN
4	동아일보			17	JTBC
5	서울신문			18	뉴스Y
6	세계일보				
7	조선일보				
8	중앙일보				
9	한겨레				
10	한국일보				

* 프로그램 선택기준은 방송의 경우 메인뉴스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메인뉴스가 없을 경우 저녁 8시대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함. 신문의 경우에는 전체 지면을 모두 포괄하되 외부필자 칼럼 및 기고문은 제외됨.

문4-1. 분석 대상 뉴스분량은?
신문, 방송 모두 ( ) 기사수

문4-2. 분석 대상 기사제목은?

문4-3. 분석 대상 뉴스 종류는?
① 스트레이트 ② 해설 ③ 기획 ④ 사설 ⑤ 칼럼 ⑥ 인물 동정 ⑦ 단신

문5. 해당 기사가 인권과 관련이 있는 뉴스인가?
① 인권보도와 관련이 있다.
② 인권보도와 관련이 없다.

문5-1. 해당 기사가 인권보도와 관련이 있다면, 인권보도 지침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1) 민주주의와 인권 :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보도
(2) 인격권 : 개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 및 기본권 침해관련 내용
(3) 장애인 인권 : 장애인 인권격 및 존엄성 무시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관련
(4) 성평등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강화, 성차별적인 표현 사용여부
(5) 성폭력, 성범죄
(6)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 다문화 인종 존중 및 다문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장관련
(7) 노인인권 :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
(8) 아동인권 : 어린이 청소년 존중 및 어린이 청소년 안정망에 대한 내용
(9) 성적 소수자 인권 :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
(10) 자살보도와 인권

문6. 뉴스의 내용이 인권보도 준칙과 관련성이 있는가?
① 인권보도준칙과 관련이 있다.
② 인권보도준칙과 관련이 없다.

☞ 여기부터는 인권보도준칙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코딩입니다. 가, 나, 다 질문의 내용을 보고 해당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 인권보도 미준수 여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음)

① 정도가 약하지만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②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③ 아주 심하게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인권보도를 미준수 기사의 경우 맥락상으로 볼 때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특정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권보도준칙 미준수로 본 건인지의 여부

① 맥락상 인권보도 미준수

② 특정 언어사용으로 인한 인권보도 미준수 (특정 언어사용으로 인권보도 미준수의 경우 문제되는 언어를 기입할 것)

다. 문제 내용 기입 : 엑셀에 직접 기입

문7.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보도 지침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정도기입 1~3	나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다 문제내용 기입
7-1.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	① 권위적인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통치, 통치권자, 영수회담, 하마평 등등)			
	②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사회지도층, 상류층, 중류층, 특권층, 접견, 읍소, 진언 등)			
	③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예: 금일봉, 물리적 충돌, 단행, 결단, 결행 등)			
	④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불법집회 등)			
7-2.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 보도	①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만년 야당, 공권력 투입, 실력저지, 실력행사, 물리적 저지, 비대가성 성금, 촌지, 떡값 등)			
	②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 보도나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사측의 일방적 주장대변 (예: 귀족 노조 등)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을 집중적으로 부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측, 정부, 경찰입장 대변			

	③ 계층갈등 조장,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달동네, 명품, 고급, 허름한 옷차림의, 등			
	④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해서 사용? (예: 고객, 사은품 등)			
	⑤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촌뜨기, 촌사람, 촌스럽다, 멍청도, 핫바지, 낙동강 오리알, 서울깍쟁이, 보리문둥이 등)			

문8. 개인의 인격권 보호 지침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정도기입 1~3	나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다 문제내용 기입
8-1. 인격권 침해	① 공인이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동의하에 공개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②당사자 동의 없이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침해			
	④ 공인의 초상권을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했는가? 가령 공인의 초상권을 자료화면 식으로 인용하는 경우임.			
	⑤ 개인의 질병이나 병명을 주의 없이 공개했나?			
	⑥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는가?			

	⑦ 자살사건의 경우 죽은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했는가? (인권보도 준칙/자살보도 권고기준)			
8-2. 무죄추정의 원칙, 기본권 침해 보호	①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예: 제목으로 동생이 빚 독촉하자 살해 등)			
	② 용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나? (예: 골프장 사장 납치범 공개 수배 등)			
	③ 용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중하지 않게 신상정보 공개를 했는가?			
	④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묘사를 했는가?			

문9. 장애인 인권보호 지침

※ 장애인 비하 용어 참조 표

장애인 비하 용어	올바른 표현
정상인(장애인의 반대말로 쓰일 경우)	비장애인
애자, 장애자,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앉은 뱅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쩔뚝발이, 쩔뚝이 찐따,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팔이	지체장애인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인
벙어리, 귀머거리, 아다다, 말더듬이, 아자	청각, 언어쟁애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 외눈박이, 사팔뜨기, 사팔	시각장애인
꼽추, 곱추, 곱사등이	지체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또라이, 백치, 바보, 천치, 얼간이, 띵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정신장애인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

언청이, 언청샌님, 쨰보	언어장애인
배냇병신	선천성 장애인
혹부리	안명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세인

*단어 사용정도를 측정할 것인지 결정하면 추가로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정도기입 1~3	나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다 문제내용 기입
9-1. 장애인 인격권 보호	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으로 표현한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했는가? (예: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 등)			
	③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 (예: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			
	④ 장애를 질병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사용? (예: 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등)			
	⑤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치 않은 몸으로 등)			

9-2.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①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장애를 고치라 등)			
	②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는 않았는가? (예: 장애인 복지는 사회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내용을 미담으로 보도하는 경우)			
	③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④ 장애인 촬영 시 장애부위를 부각하거나 인격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 (인권보도 준칙)			
	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 시 신중을 기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⑥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인식 개선에 노력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장애인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장애인의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 묘사하기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이슈 다루지 않기			

문10. 성평등 보호 지침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정도기입 1~3	나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다 문제내용 기입
10-1.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강화	①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했는가? (예: 한국의 여류화가, 여류사진 작가 등)			
	②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미망인 고일신 여사, 애국지사의미망인등)			
	③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④ 부정적 이미지 연상: 얼굴마담, 타이거우즈의 내연녀 꼬리친다, 앙칼지다, 여우, 가녀린			
	⑤가부장제에서 전통적 여성 역할 강조: 내조 외교 등			
	⑥성역할 강화표현: 장보러 나온 주부들			
	⑦양성에 해당하는 자료 제공 시 특정성만 표현			
10-2. 성적 대상화, 상품화 보도	①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꿀벅지, 베이글녀, 쭉쭉빵빵 등)			
	②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했는가?			

문11.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보호 지침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정도기입 1~3	나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다 문제내용 기입
11-1. 다문화 존중	① 다문화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려고 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② 특정 국가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살색, 흑진주, 외국인 선수–용병으로 표현 등)			
	③ 이주민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중심의 보도를 했는가?			
	④ 이주민을 한국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동정받아야할 대상으로 묘사했는가?			
11-2.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	①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예: 미등록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표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			
	②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전염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외국인노동자 이동자제 당부, 살해용의자가 조선족인 듯 등)			
	③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로 묘사했는가? (예: 외국인 노동자를 구제했다는 식의 보도)			

문12. 노인인권 보호 지침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나	다
		정도기입 1~3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문제내용 기입
12-1. 노인문제에 접근방식	①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했는가?			
	② 동정의 시선: 독거노인 눈물을 흘리며 서글픈 사연			
	③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범죄, 자살 등을 개인문제로 접근했는가?			
	④ 노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12-2. 노인의 존엄성 존중	①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② 노인인권 침해, 특히 사설 생활 노인의 인권문제를 관심있게 보도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문13. 아동인권 보호지침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나	다
		정도기입 1~3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문제내용 기입
13-1. 어린이 청소년 인권	①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했는가? (예: 초딩, 중딩, 고딩 등)			
	②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해 보도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13-2.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 문제	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 폭력적 묘사를 했는가?			
	② 입양아나 시설아동에게 상처를 줄 표현을 했는가? (예: 버림받은 아이들 등)			
	③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④ 범죄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았는가? (인권보도 준칙)			

문14. 성적 소수자와 인권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나	다
		정도기입 1.2.3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문제내용 기입
14-1.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시선	①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가? (예: 동성연애, 성적취향,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커밍아웃 사용 여부)			
	②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는가? (예: 동성애를 조장, 동성애 만연, 은밀한, 파문,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동성애에 빠져, 동성애를 즐겨 등)			
	③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스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14-2. 성적 소수자를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①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질병으로 묘사했는가?			
	② 에이즈 등 특정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지어 표현했는가? (예: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간염, 성병에 감염가능, 동성애를 마약중독 등의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시킴)			

문15. 성범죄 보도와 인권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정도기입 1.2.3	나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다 문제내용 기입
15-1. 성범죄에 대한 시선	① 성범죄 보도가 사회적으로 뉴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인권보도 준칙)			
	②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도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반인권적 범죄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③ 성범죄 발생 원인을 사회 안전망 부재 및 범죄 예방체지 미비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는가? (인권보도 준칙)			
15-2. 성범죄보도행태	① 성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을 부각했는가? (예: 성범죄 동기를 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탐닉 등으로 접근한 경우)			

	② 성범죄 보도 시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에 대한 분노 등을 지나치게 조성하지는 않았는가?			
	③ 성범죄를 피해자의 도덕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했는가?			
	④ 성범죄 보도 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했는가? (예: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공개 여부) (인권보도 준칙)			
	⑤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는가?			

문16. 자살보도 권고기준

=☞ 이 부분은 자살사건을 다룬 기사일 경우에만 해당됨.

보도내용 관련여부	가	나	다
	정도기입 1.2.3	문제유형 1.맥락/ 2.용어기입	문제내용 기입
① 자살 보도 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는가? 특히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이 공공의 관심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보도했는가?			
② 자살자의 이름,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는 보도를 했는가?			
③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는가?			

④ 자살을 영웅시하거나 혹은 미화하면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는가?			
⑤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지도 않고,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일반화하여 보도했는가?			
⑥ 자살 사건을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었는가?			

문17.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건수 (　　　　건)

→이 문항은 한 기사에 2개 이상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문항임. 여기서는 미준수 사례 건수를 기입하면 됨.

문18. 이 기사는 좋은 인권보도기사로 추천하고 싶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부록2>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의식조사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함께 2013년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기자집단의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현재 인권보도준칙에 대해 취재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순수하게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유출되지 않고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SQ2. 귀하께서 근무하는 언론사는?
1) 지상파방송사
2) 종합편성채널
3) 보도전문채널
4) 신문사
5) 기타

SQ3. 현재 귀하께서 취재활동을 하시는 분야는?
1) 정치부
2) 경제부(부동산관련 포함)
3) 사회부

4) 문화부(미디어관련 포함)
5) 교육부
6) 지역부(네트워크부)
7) 국제부
8) 과학·의학
9) 연예부
10) 스포츠
11) 생활
12) 기타

SQ4. 귀하께서 기자활동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5년 이하
2) 6-10년
3) 11-15년
4) 16-20년
5) 20년 이상

인권보도 준칙에 대한 인식

문1. 다음 준칙 중 우리나라에서 제정해 사용하고 있는 준칙 및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정해 사용하고 있는 준칙 및 기준에는 ○, 우리나라에 없는 준칙 및 기준은 ×를 해주십시오.

		제정되어 있다	제정되어 있지 않다
1	인권보도준칙		
2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3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		

문2. 선생님께서는 언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러한 보도준칙 및 기준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요? 해당되는 란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인권보도준칙	성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
알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			
대충 훑어보았다.			
한두 번 읽어 본 적은 있으나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기사를 작성 할 때도 참고하는 편이다			
중요한 사항은 잘 알고 있으며 기사를 작성 할 때도 매번 이를 염두에 두고 참고하는 편이다			

문3. 선생님께서는 인권보도준칙이 우리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 생각해본 적이 없다
2)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필요하다고 본다
5) 매우 필요하다

문4.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주변 동료들은 인권보도준칙을 비롯하여 취재 가이드라인이 되는 다양한 준칙과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1)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고 본다
2) 별로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본다
3) 대체로 잘 지키는 준칙과 기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준칙과 기준도 있다고 본다.

문5. 선생님을 비롯하여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이런 준칙과 기준들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란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1) 시간에 쫓기다보니
2) 보도준칙의 내용을 잘 몰라서
3) 기사 작성에 타성이 붙어서
4) 튀고자 하는 기자들의 욕심 때문에
5) 기타(   )

문6. 인권보도준칙과 같이 다양한 취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 인쇄일 | 2013년 11월 28일
| 발행일 | 2013년 11월 29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홍보협력과 02)2125-9872
| F A X | 02)2125-0920
| E-mail | herototo1@humanrights.go.kr
| 제작 | 태은

ISBN : 978-89-6114-302-8 93330 비매품

ISBN : 978-89-6114-302-8 93330